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집필진]

채종현 부산금정시니어클럽 관장

최윤정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조의중 사상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문유진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주무관

최영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리

[자문]

법무법인 재유 이지욱 변호사

노무법인 당찬 배설희 노무사

[감수]

법무법인 재유 이지욱 변호사

일러두기

- ▶ 본 가이드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및 작성예시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 본 가이드에서 '법'이라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I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 대응가이드에 대한 이해	08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09
	3. 주요 개념 및 관련 법령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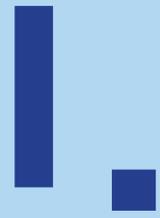
II	핵심체크 사항	
	1. 산업재해의 구분	24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주체	24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27
	4. 종사자	29
	5. 사회복지시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	31
	6.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배치기준	33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40

III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44
	2. 이행 체계도	46

IV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이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관	50
	2.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53
	3. 조직 및 인력 등 확보	57
	4.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63
	5.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79
	6. 점검·개선	86

부록		
	1.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92
	2. 각종서식	121
	3. 위험성평가 절차서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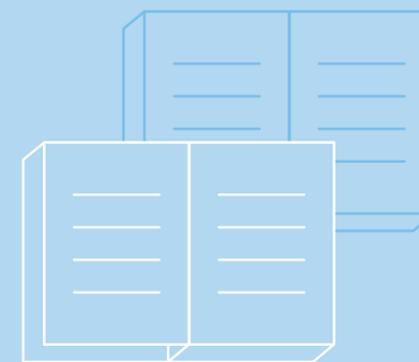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 대응가이드에 대한 이해	08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09
3. 주요 개념 및 관련 법령	17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1 대응가이드에 대한 이해

1. 제작 목적

- 본 가이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및 5인 이상 시설의 적용(2024.1.27.)에 따라 부산광역시 소재의 사회복지시설이 이 법에 대해 이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가이드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안내 사항

- 본 가이드는 시설장 및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및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가이드에서 제시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시설의 종류와 세부사업 형태, 종사자 규모 등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제정 이유 및 목적

-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여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가슴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단위 시민의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대한 경각심으로 인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 따라서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이루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및 시기

-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시기는
 -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주 및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이 적용됩니다.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대산업재해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 중대시민재해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라도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은 중대산업재해에만 적용되며, 중대시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의무주체

- ◎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주체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입니다.
 - 개인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입니다.
 -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됩니다.

4. 의무사항

-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
-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의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④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중대시민재해 역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처벌규정

- ④ 형사상 처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법인(양벌규정)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병과가능)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10억 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중대산업재해로 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적용합니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시,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에 따라 총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형사상 처벌을 받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요 개념 및 관련 법령

1.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 직업성 질병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 관련 내용은 부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참조해주세요.

중대시민재해란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③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2조(정의)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공중이용시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4.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 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 ⦿ 제2조제4호가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관련 내용은 부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참조해주세요.

- ⦿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이 포함됩니다.

! 관련 내용은 부록 중대재해처벌법을 참조해주세요.

- ⦿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은 바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음식점, 목욕장업 등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 각 시설별 영위사업 중 다중이용업(음식물 제조, 커피 판매업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의무가 판별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여부는 각 시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인 경우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 해당되며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의 시설이 해당됩니다.

3. 종사자

- ⦿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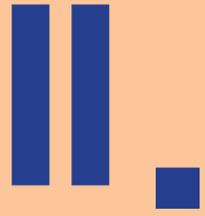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 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4.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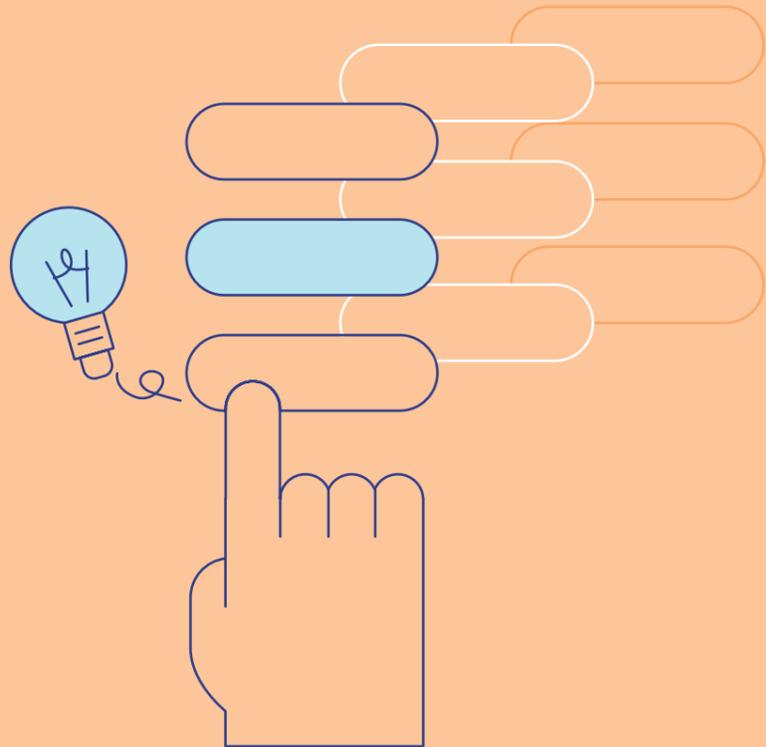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의 주체를 말합니다.
 -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그밖의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 등에 포함됩니다.

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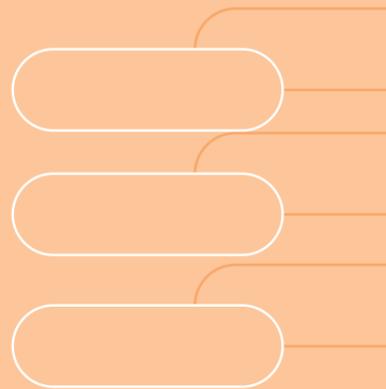
-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핵심체크 사항



1. 산업재해의 구분	24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주체	24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27
4. 종사자	29
5. 사회복지시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	31
6.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배치기준	33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40



2 핵심체크 사항

1 산업재해의 구분

◎ 산업재해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주체

Q&A

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 위탁으로 법인이 시설을 위탁하며 해당 시설별 시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시설장은 그 시설의 운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무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인가요? 아니면 각 시설장인가요?

▣ 법무법인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해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됩니다.

-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비추어 살펴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대표이사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설장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해설(고용노동부, 2021. 11)

▣ 노무법인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중처법 제2조 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 봄이 타당함.
- 단,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5, 2022.6.23.]
- 독립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법인 내 타 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함. 형식적으로 독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 관리·회계 등에 있어 법인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면 법인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임.[중대산업재해감독과-3011, 2022.8.1.]
- 즉,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나. 만약 시설 위탁 법인이 경영책임자가 된다면, 개별 시설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및 책임은 지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 및 책임의 주체는 되지 않는 건가요?

▣ 노무법인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나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함.
- 시설 위탁 법인의 장이 경영책임자가 될 경우, 개별 시설의 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 및 책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 법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음.

- 시설이 위탁운영인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직접운영인 경우에는 재단법인 등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 경영책임자등과 관련한 해설은 각 부처나 소관부서에 따라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니 여러 의견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해설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 이 때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이사*를 말함
- *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해설

- 공동대표로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2명 모두 경영책임자등에 해당 가능하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공동으로 부여
- 하나의 법인이 복수의 사업부분을 가지고 사업부분 마다 책임자가 다른 경우
 -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 복수의 사업 부문별 대표 외 법인을 대표하면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있는 경우
 - 각 사업 부문 대표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여러 사업 부문들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괄대표 또한 경영책임자에 해당 가능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Q&A

가. 사회복지시설 중 시니어클럽이나 지역사회활센터의 경우 일자리사업 중 하나로 사업장(예를 들어 음식점, 커피판매점 등)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롭게 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법무법인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이를 단순히 장소, 위치 특히 별개의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별개로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28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예컨대 사무직과 생산직), 직위(예컨대 고위직과 하위직), 업종(예컨대 제조업과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 시청료 징수원의 담당업무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 기업체인 피고 공사라는 하나의 사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8. 7. 26. 선고 2018도7650판결).

▣ 노무법인 자문

-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롭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이 대외적으로 법인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경영 전반에 걸쳐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만약 음식점, 커피판매점을 타업체에서 운영하고 단순히 사회복지시설 및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라면 별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3.29.]

- ◎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주체는 장소적 개념인 하나의 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를 의미함에 따라 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 모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 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 ◎ 장소적 개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각 단위사업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예시) 본사와 생산공장 /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등

4 증사자

Q&A

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증사자 범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법무법인 자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보호하고자 하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이고,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기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증사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증사자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더 넓습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노무법인 자문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종사자’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해당 질의는 각 법률의 보호 적용대상자를 묻는 것이라고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 대상자는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3조)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보호 대상자는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임.(중처법 제2조7호)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보호 대상자인 ‘종사자’는 산안법 상의 보호 대상자인 노무제공자보다 그 범위가 넓음.

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고용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코드가 여러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각각의 사업 단위별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법무법인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물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위 일자리사업 등의 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코드가 수개인 경우라 할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지의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에 속한 사업장 - 장소적으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 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자리사업의 성격에 따라 고용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코드가 여러개일지라도 종사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노무법인 자문

종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형태,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일자리 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코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때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합니다(소방청 해설).

◎ 종사자 범위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따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자

5 사회복지시설의 다중이용시설 여부

Q&A

가. 사회복지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법무법인 자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중이용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다중이용업에서 정하는 영업을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 다중이용업에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에 따라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노무법인 자문

- 해당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중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부,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 게임시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안마시술소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나. 사회복지시설은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에 해당되나요? 이때 중대시민재해 제외 사항이 적용되나요?

▣ 법무법인 자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 ‘공중이용시설’에 있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은 위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위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서 주된 업종별 매출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은 달리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에 비추어볼 때 사회복지시설은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제외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 노무법인 자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②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 업종의 경우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으로 보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이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동시에 각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할 것을 권함.

6 안전·보건 관리 인력의 배치기준

1. 인력별 배치기준

구분	관계법*	업종	배치기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 제15조 영 제14조 [별표 2]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관리감독자	법 제16조	-	-	-
안전관리자	법 제17조 영 제16조 [별표 3]	보건업 청소·수선시설 운영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영 별표4 자격을 갖춘 1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보건관리자	법 제18조 영 제20조 [별표 5]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청소·수선시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영 별표6 자격을 갖춘 1명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법 제19조 영 제24조	제조업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 또는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산업보건의	법 제22조 영 제29조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법 : 산업안전보건법/ 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해설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배치해야 하며 그 외 안전보건 인력에 대한 배치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의 배치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설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람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 인력 배치 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제15조)
 - (관리감독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제16조)
 -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두어야 함(제17조)
 -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도록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자를 보건관리자로 두어야 함(제18조)
 - (산업보건의) 근로자나 건강관리나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등을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제22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수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에 의해 일정 수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2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제25조)
-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된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시설의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 및 규모(시행령 제34조 별표9)

사업의 종류	규모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노동부 해설집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2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1000~3999	4000~4999	5000 이상			
k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 (68)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리업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l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682	부동산 관리업 서비스업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수업	731	수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85)	851	초등교육기관											
			852	중등교육기관											
			853	고등교육기관											
			854	특수학교, 외국어학교 및 대안학교	8541	특수학교									
					8542	외국어학교 및 대안학교									
			855	일반 교육서비스업	8551	초·중·고등학교	855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52	기타 교육기관	8552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5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85531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54	사회교육 시설	85541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55	직원 훈련기관									
					8556	기술직업 훈련학원									
			855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856	교육 서비스업	8561 예술학원							
857	교육 지원서비스업	8571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보건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A

가. 겸직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법무법인 자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개별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관리자의 수를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호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수가 정해지며, 달리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 노무법인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상의 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하 “전문인력”이라 함)이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며, 해당 전문인력이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제2022-14호)」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전담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67, 2022.6.13.]

나.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직도를 가진 시설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배치해야 되는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무엇인가요?

* 노인돌봄, 노인일자리아업 참여자는 기간제 일자리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약 9개월 근무)



▣ 노무법인 자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을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배치해야 함.(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1호, 시행령 제4조2호 및 6호)
- ‘안전·보건업무 총괄 전담 조직’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설치 의무가 있음. 예시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이므로 총괄전담조직은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시행령 제4조제2호)
-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의무가 없음.(산안법 시행령 별표3, 별표5, 산안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제1항)
- 중대재해처벌법과는 별개로 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2, 제34조 및 별표9)

고용노동부 해설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함
- 겸직이 가능한 경우
 -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② 건설업의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에 한함)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가능
- 다만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의 별도 고시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시간을 안전 또는 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안전보건 관련 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련 인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별도로 확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겸직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1. 관계 법령(지침등) 상의 안전점검의 의무

관계 법령*	의무사항	점검주기 및 내용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정기점검	매반기별 1회 이상 점검(자체 점검) · 결과는 지자체에 제출(온라인)
	지자체 점검	연 2회(5월 및 11월) ·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 여부 등
	수시점검	시설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점검기관에 위탁도 가능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정기점검	매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 미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
소방시설법 (제25조)	자체점검	작동기능점검 : 연1회(대부분 대상물) 종합정밀점검 : 연1회(해당 대상물에 한정) ※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에도 작동기능 점검을 하여야 함.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도 가능
수도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2조의3)	물탱크 점검 및 청소	소독 등의 위생조치 정기적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2조, 시행규칙 제54조)	정기검사	매2년마다 점검
	안전정밀검사	매3년마다 점검 · 승강기 결함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설치검사 후 15년이 지난 경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	보일러검사 (소형 온수보일러)	설치검사 후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 재검사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정기점검	매년(1년 마다) 검사 · 시설에 일반용전기설비가 설치된 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전후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시행령 제36조)	방역	시행횟수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 참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5조)	정기검사	매년(1년 마다) 검사 · 제26조에 의거 수시검사 시행 가능

※ 위에서 제시한 법령은 예시이며, 해당 시설의 설치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령은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 국토안전관리원의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협의를 통해 무상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관리 교육·훈련

관계 법령 및 조항	교육과정	대상 및 시간
사회복지관리안내 (화재예방법 제37조제1항)	소방훈련 및 교육	연 1회 이상 : 종사자 및 거주자 ※아동·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거주시설은 연2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은 별도 규정을 따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1항 등)	정기교육	· 매반기 6시간 이상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에 직 접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그 외의 근로자
	채용 시 교육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 · 4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상 · 8시간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식품위생법 (제41조, 제56조 등)	식품위생교육	매년(1년 마다) :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	매년(1년 마다) : 조리사와 영양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등)	승강기 관리교육	매3년 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

※ 위에서 제시한 법령은 예시이며, 해당 시설의 설치법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은 별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44

2. 이행 체계도

46

3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1항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	해당 사업 혹은 사업장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전체 사업장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운영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외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전체 사업장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권한/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수행시간 보장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 인력 겸직 배치 사업장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발생할 급박한 위험 대비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도급, 용역, 위탁 시행 사업장
제1항제2호.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전체 사업장

제1항제3호. 지방자치단체 등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개선·시정명령 등에 관한 보고 시스템 구축 및 그에 따른 이행	전체 사업장
제1항제4호.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의무이행 상황 점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②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상황 점검(반기 1회 이상)	전체 사업장
③ 의무 미이행 시 인력배치, 예산편성·집행, 교육실시 등 필요 조치	전체 사업장

2.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의무사항	적용대상
(필요시) 각종 계약별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전체 사업장

3. 조치 등에 관한 서면 보관(시행령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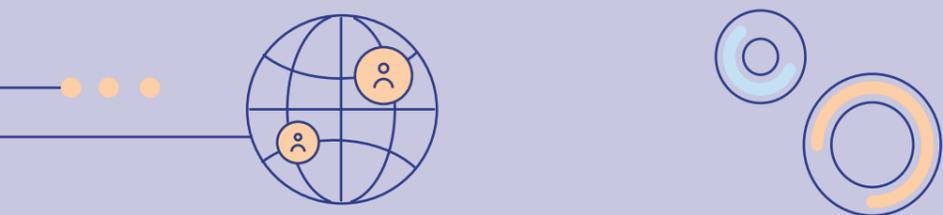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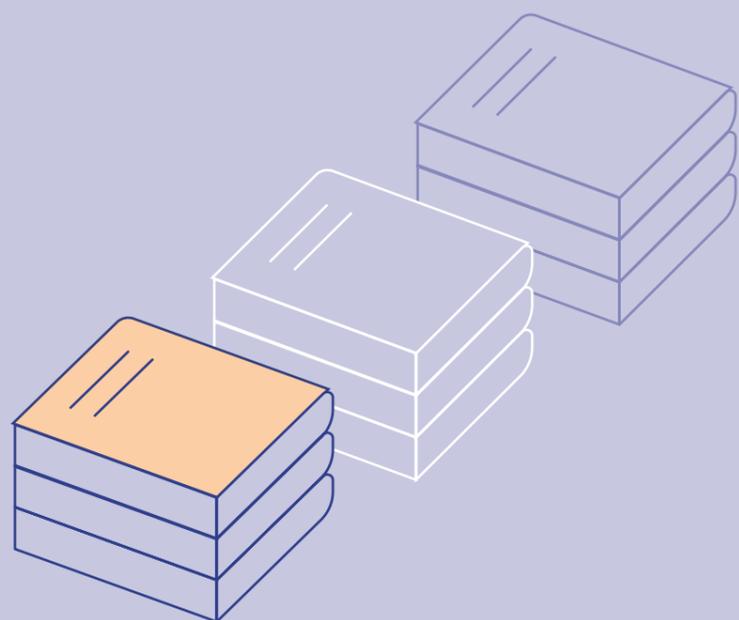
의무사항	적용대상
조치 등 이행에 관한 사항 서면 작성 및 보관(5년간 보관)	전체 사업장

2 이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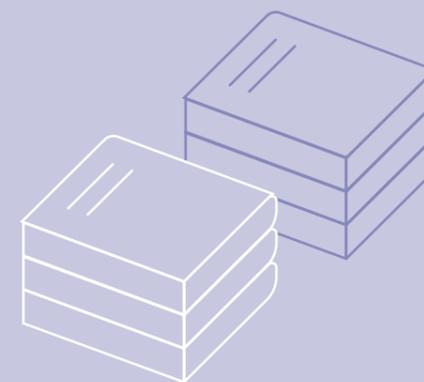


IV.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이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관	50
2.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53
3. 조직 및 인력 등 확보	57
4.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63
5.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79
6. 점검·개선	86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이해

1 안전보건 확보의무 개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핵심요소 별 검토사항

핵심요소	점검 항목	비고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 목표(비전)와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시설의 규모, 위험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보건활동별 업무절차를 정하여 운영하는지? * 안전보건활동별 내부규정 예시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규정, 설비 점검·검사·보수 등 유지관리 규정, 안전작업허가 절차 규정, 도급·용역·위탁 업무 관리 규정, 신규 장비 도입 및 공정 변경 등 변경관리규정등	
근로자의 참여	안전보건에 관련된 정보 및 참여절차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지?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로 대체 가능
	산업재해·아차사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를 파악하고 있는지?	

핵심요소	점검 항목	비고
위험요인 파악	보유하고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로 대체 가능
	업무내용(형태)을 고려하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지?	
	폭발위험, 밀폐공간, 추락 등 고위험장소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파악된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지?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적절히 검토되는지?	
	위험요인 개선방안 마련 시 사업주 등의 검토가 이뤄지는지?	
	보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정비가 이뤄지는지?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선행되어 위험요인이 통제되는지 ?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확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위험요인 및 제어방안, 안전작업절차,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대한 근로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지?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는지?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도급·용역·위탁 관련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는지?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도급·용역·위탁받은 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 및 개선	도급·용역·위탁 시 관련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있는지?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성과평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실행계획 및 내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지(정기 체계점검)?	
	발견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지?	

2. 추진단계별 준비

추진단계	추진내용
①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정규직 및 한시적 근무자 등) 현황 ·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 기관 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 사업장 구분 · 업무 분야별 도급·용역·위탁 현황
② 조직·인력 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필요한 전문인력 검토 · 조직도 구성 및 업무분담
③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할 위험 대비 매뉴얼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련 내용 검토 및 마련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이행 시기별 확인) · 교육, 훈련
⑤ 점검·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 필요한 조치 및 개선

2 기본현황 파악 및 분석

1. 종사자 현황 파악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절한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시설 및 사업별 종사자, 참여자 등의 현황 파악이 필수입니다.

· 기관별 종사자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사업장 단위 구분, 전담조직 설치 여부 검토, 인력 배치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포함 내용: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자 ③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관계가 있는 자

예시(노인복지관 기준)

구분	기획총무팀	교육문화팀	지역복지팀	어르신돌봄팀
정규직	3	3	4	3
계약직	1	2		20
단시간 근로자	-		300	
사회복무요원 등	-		2	

2. 근무환경 및 산업재해 발생 현황분석

시설의 업무 분야에 따른 조직·지휘·계통, 근무환경, 작업방식 등을 파악합니다.

※ 위임전결규정 등 확인을 통해 조직·지휘 계통 확인 가능

종사자의 건강 상태 등 특이사항 여부도 파악합니다.

업무 분야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과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할 수 있고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 설문조사 등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예시

종사자 안전보건 설문조사

설문조사 배경기술 (예시) 동 설문조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보고 느끼신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나와 내 동료가 일하는 곳을 보다 안전하게 만듭니다.

1. 일하시는 업무분야는 어디입니까? (해당 분야에 ✓)

각 시설의 업무 세부 분야별 세분화하여 사용

2. 일하시는 중 사고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분야에 ✓)

*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부상. 다치지는 않았으나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었던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 작업 중 넘어졌으나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포함하여 작성)

예 아니오

2-1 사고는 어떤 유형입니까? (해당 분야에 ✓)

- 떨어짐(높은 곳, 개구부(지붕, 바닥, 벽 등에 뚫려있는 곳) 등에서 떨어져 다침)
- 넘어짐(미끄러지거나 걸려서 넘어지면서 다침)
- 부딪힘(차량, 설비, 기계·기구, 구조물 등 물체와 부딪혀 다침)
- 끼임(물체와 물체 사이에 신체의 일부가 끼임으로 인해 다침)
- 깔림·뒤집힘(물체가 쓰러지거나 뒤집힐 때 깔리면서 다침)
- 무너짐(쌓여진 물체나 건축물이 무너지면서 다침)
- 물체에 맞음(위에서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아서 다침)
- 감전(인체가 전선 등에 접촉하여 전류가 흘러 상처를 입거나 충격을 느낌)
- 화재·폭발(주변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의 화재 및 폭발로 인해 다침)
- 기타 유형()

3.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을 앓은*경험이 있습니까? (해당 분야에 ✓)

*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 화학물질,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거나 작업조건·방식 등에 의해 발병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 아니오

3-1 질병은 어떤 유형입니까? (해당 분야에 ✓)

- 근골격질환(신체에 부담되는 힘·동작, 부적절 작업자세 등으로 근육, 인대 등 손상)
- 뇌·심혈관계 질환(뇌출혈, 심근경색 등 혈관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
- 기타질병()

4. 일하시는 곳에서 사고(떨어짐, 넘어짐, 베임, 끼임, 깔림 등 일하는 중 다치는 것)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다면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 예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중심으로 예시

* 위험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장소, 해당 위험요인 등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5. 일하시면서 건강에 영향(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이유로 걸린 질병)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 예시) 해당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상 영향을 중심으로 예시

* 건강상 유해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장소, 해당 요인, 작업내용 등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6. 기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3. 사업장 구분

- ☉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 구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 ☉ 사업장의 개념은 장소적 동일성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 ④ 업무장소, 업무의 성격, 인사관리, 예산, 채용, 복무, 임금, 교육 등의 파악을 통해 사업장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능력이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063, '21.6.25)

4. 도급·용역·위탁 현황

- ④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용역·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의 업무절차와 위험요인 등을 파악합니다.

❖ 지배·운영·관리 도급·용역·위탁 사업 예시

업무·사업명	해당 여부	위험요인
소규모 도급 공사(인테리어 등)	○	추락, 전도, 감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점검 포함)	○	끼임, 추락 등
물탱크, 정화조 청소	○	질식, 추락 등
전기 유지보수		
보일러 유지보수(점검포함)	○	폭발, 화재 등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	○	감전, 추락 등

3 조직 및 인력 등 확보

1. 해당 법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②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 ③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할 것

2. 필요인력 검토

- ④ 시설의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필요인력을 확보하고 안전보건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 ※ 순수 사회복지 서비스업만으로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별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배치 인력 및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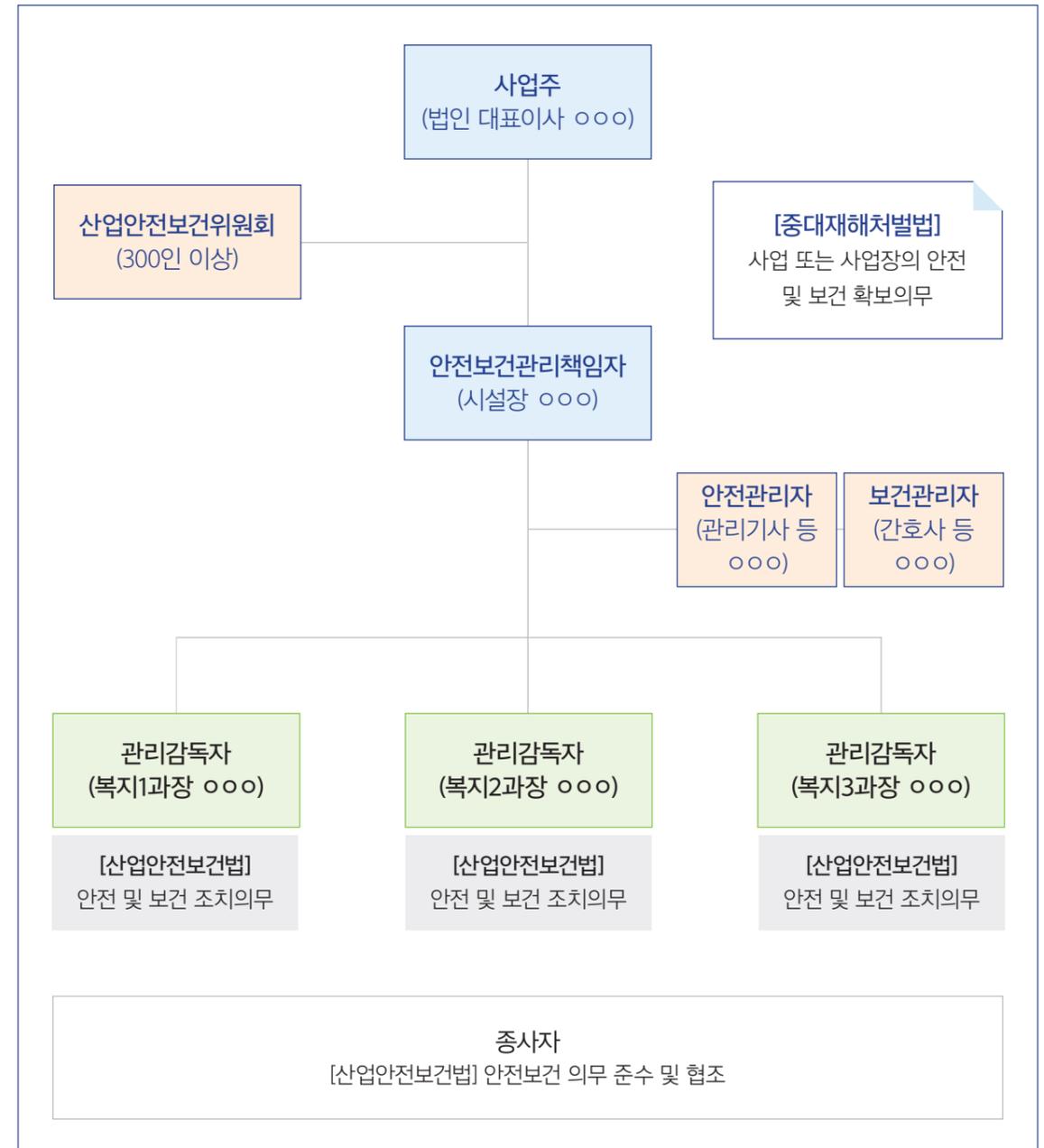
구분	관련조항	주요 업무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3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자격 :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등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별표5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하는 업무 수행 자격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안전보건교육 이수자(겸임 가능)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 : 근로자 건강관리, 보건관리자 업무 지도 자격 :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3. 조직도 구성 및 업무분담

☉ 시설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책 등	주요 업무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 법인 전체 시설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시설장	· 단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 총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조62조에 관한 업무
관리감독자	과(팀)장 등 부서장	· 부서 수행 업무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관한 업무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업무 (예산 집행 업무,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 포함)
근로자	전체 종사자	· 안전경영방침 및 목표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이행 준수 및 안전조치들에 대한 수행

☉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구성 예시



④ 업무배치표 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당해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을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평가기준에는 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업무 세부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평가는 반기별 1회 이상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이 적정하게 부여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④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여 이후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행평가표 예시

평가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 평가표(안)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과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 보건총괄 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4 기준, 절차, 매뉴얼 마련

1. 해당 법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②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체 가능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②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64조·제7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한 경우 종사자 의견 청취로 봄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매뉴얼을 마련 ②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 ②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시
행
령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한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 활동 절차 등을 마련합니다.
- ⦿ 경영방침을 수립할 때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합니다.
- ⦿ 시설 혹은 부서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목표 설정 예시

- | | |
|-------------------|--------------------|
| · 안전보건 예산·인력 증감률 | · 종사자 의견 건수 |
|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 건수 | · 안전작업절차서 도입·개선 건수 |
| · 위험요인 발굴 건수 | · 안전보건 교육 실시 건수 |
| · 위험요인 개선조치 건수 | · 비상조치계획 훈련 건수 |
| · 산업재해 감소율 | |

☛ 경영방침 예시

안전보건경영방침

○○○복지관은 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가치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신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와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 사화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월 ○○일

○○○○○○○ 관장 (서명)

-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시설의 사업의 변경, 최고경영자의 변경, 관련 법률의 재·개정,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등, 시설의 내·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전체 종사자가 공유합니다.
 - 공유방법에는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안내, 교육 시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유 범위에 도급, 용역, 위탁 업체도 포함됩니다.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 마련

- 업무 분야별 근무환경 등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시설 및 사업별 보유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등의 감소대책이 포함되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업무마련 예시

- 추락·끼임 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방호조치 설치
- 고객응대 업무가 있는 경우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 마련
- 유해인자 노출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 측정 실시 및 작업환경개선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있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 하는 경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

- 대책의 적절성, 개선 진행 상황 및 개선 완료여부는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 위의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예시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방법
 -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 조사(종사자등)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위험성 평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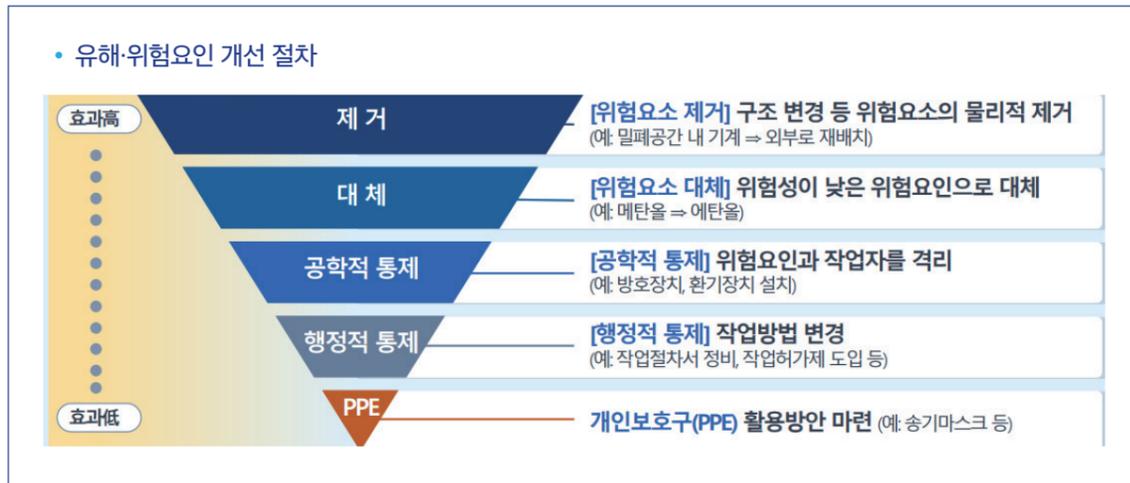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 시점
 -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시설 내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보수 시
 - 작업 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

• 유해·위험요인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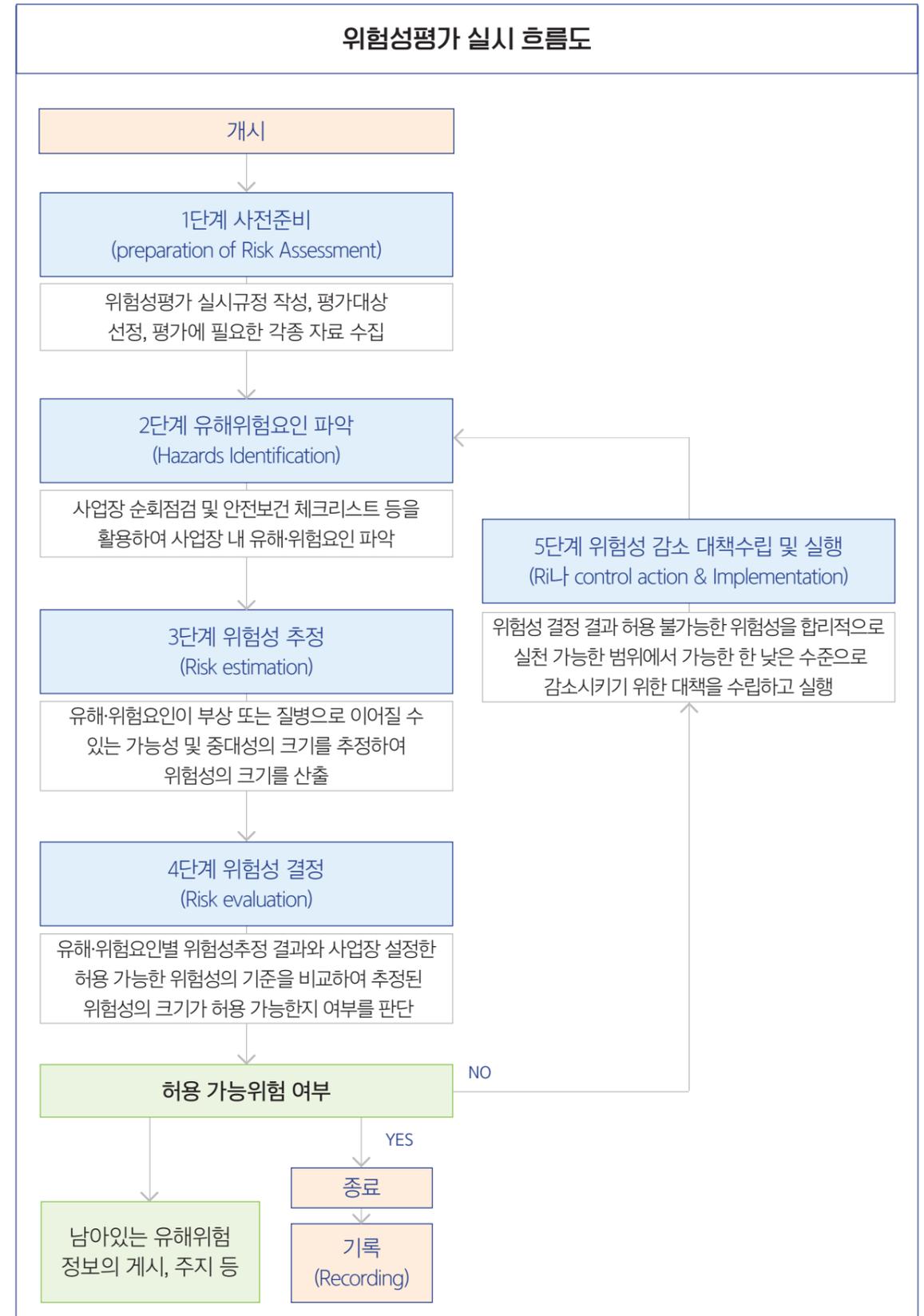
구분	파악 내용
조직문화	과중한 노동, 조직 내·외부의 각종 차별과 괴롭힘, 트라우마 등
기계·기구·설비·원재료	위험기계, 유해인자, 위험장소, 작업형태 등
자연재해	화재, 폭발, 태풍 등의 천재지변, 감염병 등
건축물	시설물의 내·외부 상태 등

•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

- ① 목록작성 :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맨 위부터 나열하여 목록 작성
- ② 알림 :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근로자에게 신속 명확하게 설명
- ③ 표시 : 작업별, 장소별, 설비별 유해·위험요인을 표시하여 경각심 부각
- ④ 개선요청 : 시설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종사자가 개선 요청
- ⑤ 안전조치 : 유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설비 개선 등의 안전조치 실시
- ⑥ 담당자 지정 : 안전조치 이상유무를 감시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 ⑦ 안전작업절차 표시 : 위험이 존재하는 공정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작업장에 부착



- 1 주요 유해·위험요인에 따른 사고유형 부록 참조
- 2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양식 부록 참고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는 작업별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 종사자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위험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종사자 의견 청취 예시

- 운영제도 예
 - 제안제도 운영
 - 인트라넷을 통한 게시판 운영
 - 사업장별 익명 신고함
 - 아차사고 발굴제도 운영 등
- 종사자 의견 청취 예시

[작업 전 안전미팅(TBM)]

 -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 안전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
 - 절차예시
 - ①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유도
 - ② '안전한 작업방법' 선택을 목적으로 논의
 - ③ 가급적 전원이 합의한 작업방법으로 결정
 - ④ 회의 종료 전, 기본 안전수칙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
 - ⑤ 결과보고

[아차사고 발굴]

 -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함
 - 절차예시
 - ① 아차사고 보고(작업자 → 관리자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② 아차사고 원인 분석(작업자&관리자 →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③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작업자·관리자 참여)
 - ※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위험요인을 함께 검토
 - ④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보고(소속기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본부)
 - ⑤ 아차사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지시(본부 전담부서 → 소속기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 ◎ 시설 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매뉴얼에는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 대응조치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며, 지체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특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등은 세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구분	실시 내용
① 상황전파 및 작업중지	·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작업중지
② 초기대응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 필요시 2차 피해방지 위험요인 제거
③ 긴급대피	· 비상대피장소 긴급대피
④ 신고 및 보고	· 상황 발견자·관리감독자 등이 119신고 및 응급처치 시행 ·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에 신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영책임자 등에 보고
⑤ 현장 보존	· 소방서, 산재예방 근로감독관 등의 현장 보존 지휘 협조

❖ 초기대응요령 예시

사고상황	대응요령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며,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기계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를 정지
무너짐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 산화성물질 누출	점화 원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 및 접촉 금지

④ 구호조치는 '119 등' 긴급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합니다.

구분	업무내용
⑥ 신속한 연락과 처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 응급조치 (전원차단, 기계정지등) · 119신고 및 비상연락 체계 전파
⑦ 현장 응급처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 시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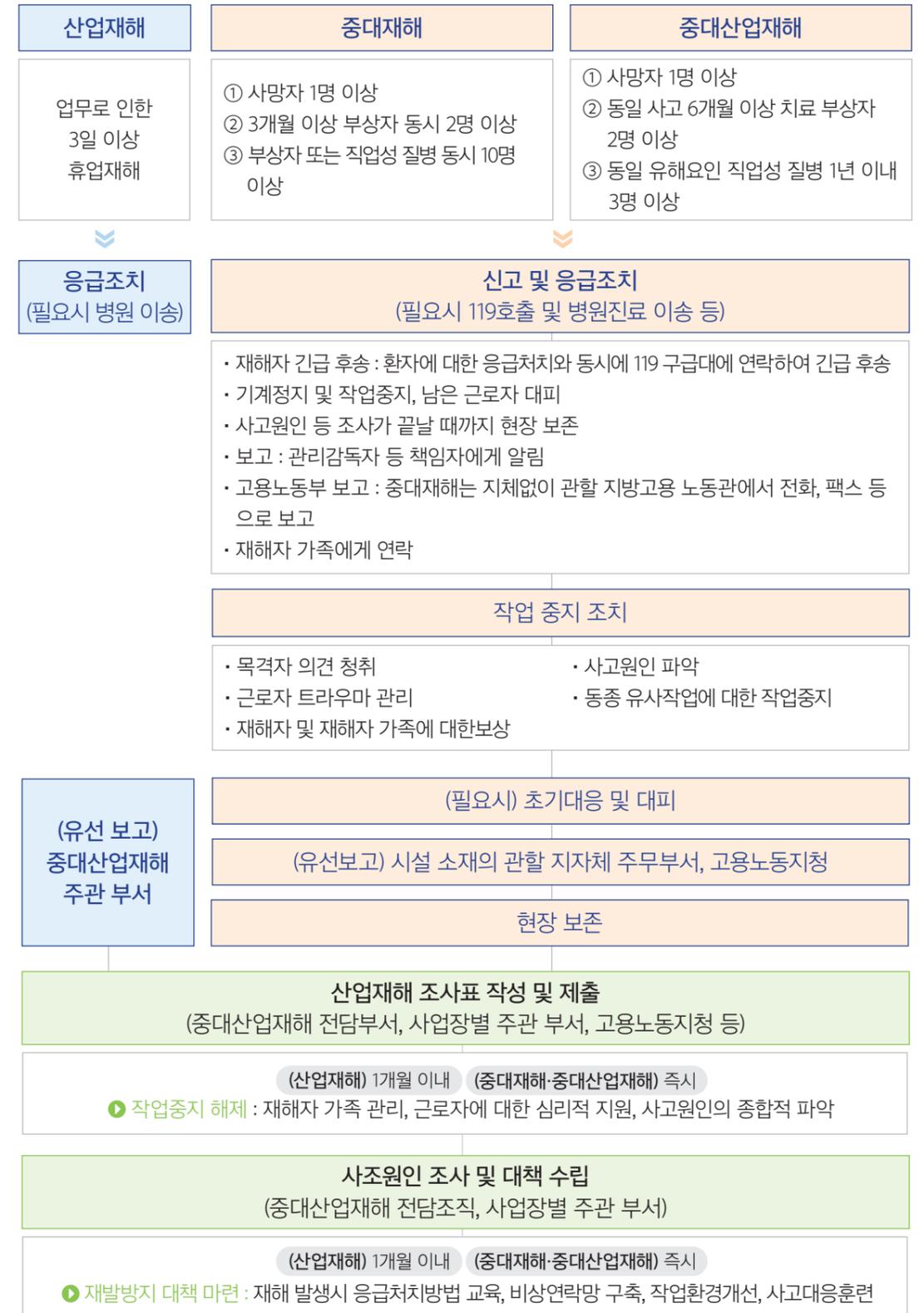
⑤ 추가피해방지 조치는 재해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 공유, 관계 행정기관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분	업무내용
⑧ 재해 원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사고조사 → 법인 보고
⑨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즉시 개선 · 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 (종사자 등) · 조치 결과를 법인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보고

④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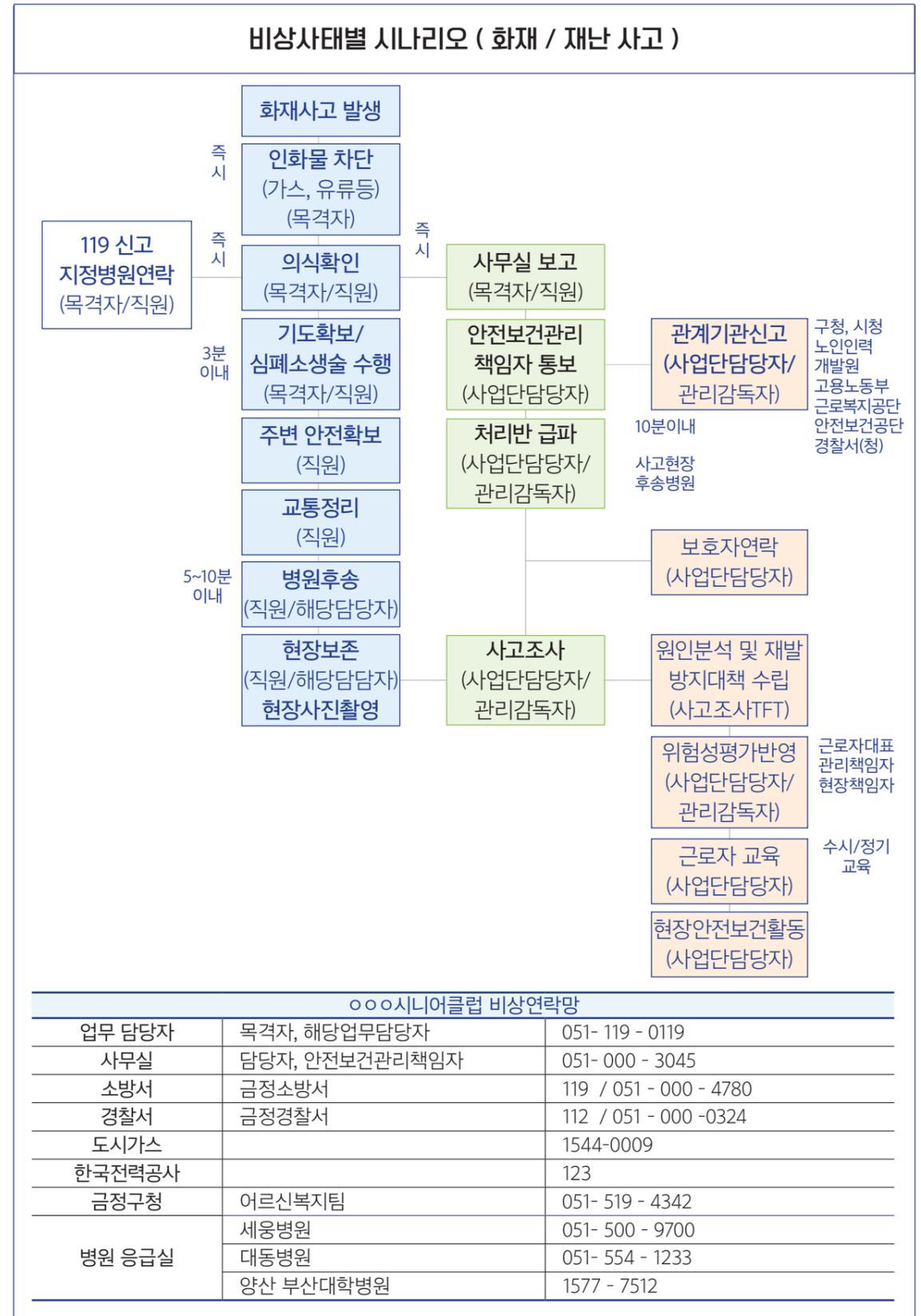
❗ 매뉴얼 관련 양식 부록 참고

④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도



❖ 비상사태 대응시나리오 예시

비상사태 대응시나리오 (화재 / 재난)		결 재	담당	대리	과장	관장
			/	/	/	/
비상 사태명	근무지 화재 및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발 생 장 소	해당사업 활동장소 * 야외·노인일자리사업 활동장소가 되는 공공장소, 공원, 인도 등 * 실내·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해당 장소의 실내 등					
발 생 내 용	* 활동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 * 자연재난 및 사회적 재난·지진, 폭우, 물범람, 산사태, 감염병 등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 화재로 인한 호흡기 및 화상 피해 * 자연/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피해					
목 표 시 간	행동 요령				비 고	
1분	최초발견자 : 비상경보발령(화재 발신기/ 구두로 외침) → 화재 및 재난 119 신고 (해당업무담당자 /목격자) : 발생시간 / 발생장소 / 발생내용 간결 신속하게 신고 → 활동장소 사무실(행정실) 및 시니어클럽 비상연락 → 활동장소내 인명피해 예방 대피 우선 안내 (대피 통로, 장소 확보 및 안내)				인화물질 (가스,기름) 및 연기 차단	
2분	→ 화재진압 가능여부 판단 / 진화 (소화기:분말/CO2/K급) → 소방자위대 비상연락 및 가동 / 작업자 대피 안내 → 사고자 조치 : 119 조치사항 진행 (의식확인 - 기도확보 - 심폐소생술)				사고자 조치 대피 안내	
3분	119 화재 진압 및 재난 대응 자체소방대 출동 → 소화작업 및 구호활동				소방차 진입 안내	
5분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후 병원 후송 (보호자 연락) 후송조치시 해당업무담당자 2인 1조 동승 (보호자 연락)				실시간 연락 유지	
10분	화재 완전진압 확인 후 화재 사후 수습 재난 대응 후 사후 수습				산소마스크 등 보호구 필 히 착용	
2분	대피자 현장 복귀 사고 내용 및 피해 확인 / 사고 기록 관리 피해상황보고 (법인사무국, 시군구 관계부서)				사고보고서 기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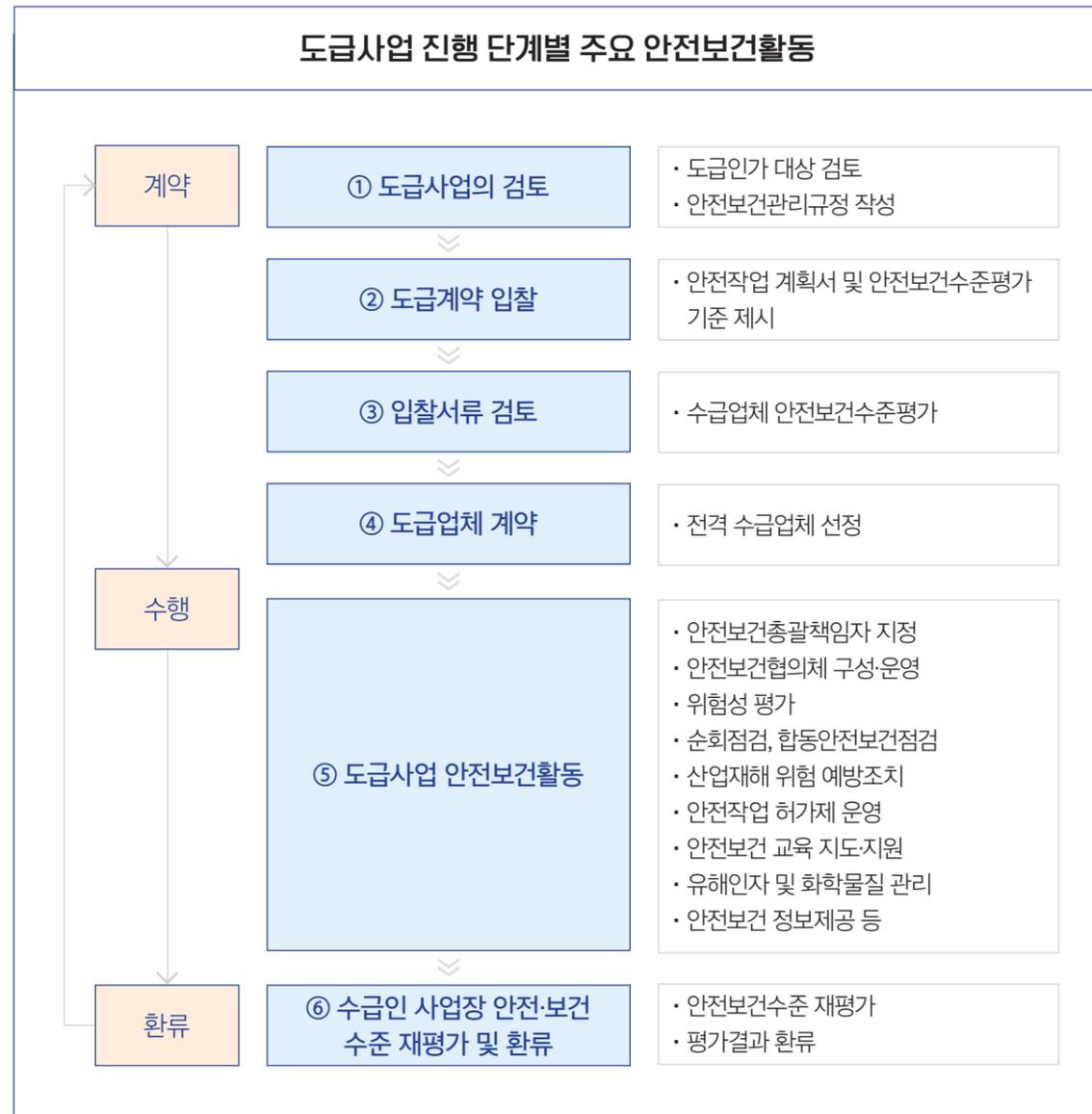
아차사고 대응시나리오 (낙상 / 화상 / 감전사고)		결재			
		담당	대리	과장	관장
비상 사태명	낙상사고	화상사고	감전사고		
발생 장소	해당사업 활동장소 * 야외 -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장소가 되는 공공장소, 공원, 인도 등 * 실내 -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해당 장소의 실내 등				
발생 내용	이동 및 작업시 낙상사고	배식 및 작업시 화상사고	이동 및 작업시 감전사고		
예상되는 피해 (안전보건영향)	인도, 계단 이동 등 보행시 낙상 사고	뜨거운 음식 작업 및 배식 시 화상 사고	이동 보행 및 작업시 열기구 등 감전 사고		
목표 시간	행동 요령			비고	
1분	최초발견자 : 사고 유형 파악 ○ 신고 (영양사, 활동조 책임자) → 보건선생님 연락 + 119 신고 ○ 신고 (활동조 책임자, 동료) → 사무실 해당업무 담당자 보고 + 119 신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즉시 보고 (대리, 과장)			비상연락 체계유지 사고유형 파악	
2분	○ 현장 책임자 응급 처치(119통화) → 119 병원후송 사고자 조치 : 119 조치사항 진행 (의식확인 - 기도확보 - 심폐소생술)			사고 유형별 조치	
3분	○ 사무실 해당 담당자와 1명 사고 현장 출동 (2인1조) ○ 현장 도착전까지 사고자 보호자 비상연락 조치			실시간 연락유지	
15분	○ 해당 담당자 사고장소지 및 후송병원 도착 · 119 병원 응급실 후송 조치 및 보호자 확인			실시간 연락유지	
근무종료시	○ 사고보고서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 사고 내용 및 원인 분석 후 사고 조치 기록관리 · 산업재해조사표 해당사고시 작성 (7일 이내) · 제출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과(30일내) / 구청 등			사고보고서 기록관리	
사고종료시	○ 위험성 평가 실시 ○ 사고 처리 진행 과정 및 종결과정 기록관리 · 보험 및 산업재해처리			재발방지 대책수립	



6.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준 마련

- 도급·용역·위탁을 진행할 때는 ① 도급사업 사전검토 및 수급인 선정 ② 도급사업 전 위험사항 검토 ③도급사업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사업 진행 단계별 적절한 안전보건활동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1)’ 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정책자료→정책자료실



5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1. 해당 법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예산을 편성 및 집행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
행
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 후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을 통한 의무 이행 조치 실시
3.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4.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예산의 확보 등을 통한 교육 실시

2. 계획 및 절차에 따른 이행 평가

- 시설의 안전보건 목표에 따라 훈련, 교육, 예산 수립 및 집행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 추진계획은 세부목표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 법령 제·개정사항, 위험성 평가사항, 자체 점검 결과 및 종사자 의견수렴, 안전점검,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법정 의무 사항 등 모든 안전보건 사항을 종합하여 수립합니다.

☞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표 예시

이행사항		점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사항
안전인력 확보	① 시설·설비 안전조치 업무 ② 시설·설비 유지보수 업무						
안전예산 편성·집행	① 인건비 ② 시설·장비 확보·유지관리비 ③ 안전점검비 ④ 기타비용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수행	① 정기안전점검 ② 정밀안전점검 ③ 정밀안전진단						
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인력확보 ② 안전점검 등 ③ 유지관리 ④ 안전예산 편성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① 유해·위험요인 점검 ②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③ 재해발생시 대응 ④ 비상대피훈련						
도급용역 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① 재해예방능력 평가기준·절차 ② 재해예방비용 기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점검	① 의무이행사항 점검 ② 미이행시 조치						
안전보건 교육	① 교육이수점검 ② 미이수시 조치						

☞ 안전보건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 항목	
방호장치, 안전장치 구입 비용	안전보건 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안전보건진단, 위탁 및 컨설팅 비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공상자 치료 및 응급구조 관련 비용
건강관리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비용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안전보건관계자 외부교육 및 훈련 비용	안전보건 포상 비용
안전보건활동 캠페인 등 지원비용	안전보건조직 운영 및 재해예방 인력 비용
협력업체 지원 비용	

☞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표 예시

• 안전예산 편성·집행 현황

구 분	계	안전점검	보수·보강	안전조치*	교육·훈련
예산액	00	00	00	00	00

☞ 예산작성 예시

- 2022년 안전보건 예산편성 현황 및 추진금액

구분	세부내용	금액(천원)	비고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외부균열보수 및 창호코킹공사		확보
	벽면철거 및 교체 공사		확보
	소방시설 종합공사		확보
	소방시설 정비		확보
	승강기유지비		확보
	물탱크 유지비		확보
	정화조 청소비		확보
	기타 수리비		확보
	철물 구입 등 정비비		확보
	전기안전 대행료		확보
	소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점검유지비		확보
	자동손소독기 유지비		확보
	시트클리너 유지보수비		확보
	시설 및 식당 방역비		확보
	의자세척용역비		확보
	소방안전협회비		확보
	재산종합공제(화재보험)가입		확보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가입		확보
	직원단체상해보험		확보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확보
	안전보건위원회		확보
	의약품 정비		확보
	소계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안전인력 인건비		확보
	직원교육		확보
	소계		
안전보건 중장기 계획 추진	중장기계획 수립		확보
안전보건인증 획득	위험물저장소 면허세		확보
안전시설 신규 건설 및 투자	소방설비구축		확보
예비비			확보
총계		-	

3. 교육 훈련

- ☉ 경영책임자 등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인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 센터: www.safetyedu.net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 등 참조
- ☉ 교육계획 수립은 ①교육 목적, 범위, 대상, 방법 및 인원 ②교육의 종류, 과정, 교육과목 및 내용, ③교육 시기, 횟수 및 시간, ④교육방법 및 강사, ⑤교육 성과측정 및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합니다.

☞ 훈련 교육 계획서 예시

연간교육										작성	검토	승인
연 번	교육구분			교육과정	일정						대상 인원	교육 방법
	산업 안전 보건	전기 안전	화재 훈련		1월	2월	3월	12월		
1	○			정기교육								
2				신규채용 교육								

☞ 안전보건 교육은 시설의 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시설 필수 교육 등을 확인하여 함께 수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근로자 교육

종류	대상	시간
정기교육	전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신규교육	신규 채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8시간 · (일용직) 1시간 · (특수고용직) 일반 2시간 · (특수고용직) 단기·간헐 1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해당 작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1회 2시간 · (일용직) 1회 1시간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업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1회 16시간 · (일용직) 2시간 · (특수고용직) 일반 16시간 · (특수고용직) 단기·간헐 2시간

☞ 안전보건 관계자 교육

구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2년 주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2년 주기)

6 점검·개선

1. 기준, 절차, 매뉴얼 등에 따른 안전보건 활동 이행여부 점검

☉ 시설장 주재로 주기적인 안전점검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안전보건활동 점검 및 문제점 발굴을 할 수 있습니다.

📌 점검표 부록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는 안전보건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시행령 제4조제1호)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시행령 제4조제3호)
- 안전보건관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시행령 제4조제5호)
- 종사자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및 이행(시행령 제4조 제7호)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시행령 제4조제8호)
-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 관리비용 기준, 적정 기간 기준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관리(시행령 제4조제9호)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 • 이때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 안전보건표지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참고
안전조치 (제3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보건조치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증 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건강장해

2. 필요한 조치 및 개선

- ☉ 안전보건활동의 점검 시에는 시설의 안전·보건 조치의 적정성 확인과 조직·인력, 설비, 예산 등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기준·절차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보고 발굴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은 누가·언제까지·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기한 내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점검시 확인 예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업무가 충실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였는지 추가 확인
- 현장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발견된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의 문제인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았는지 추가 확인

⊙ 또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참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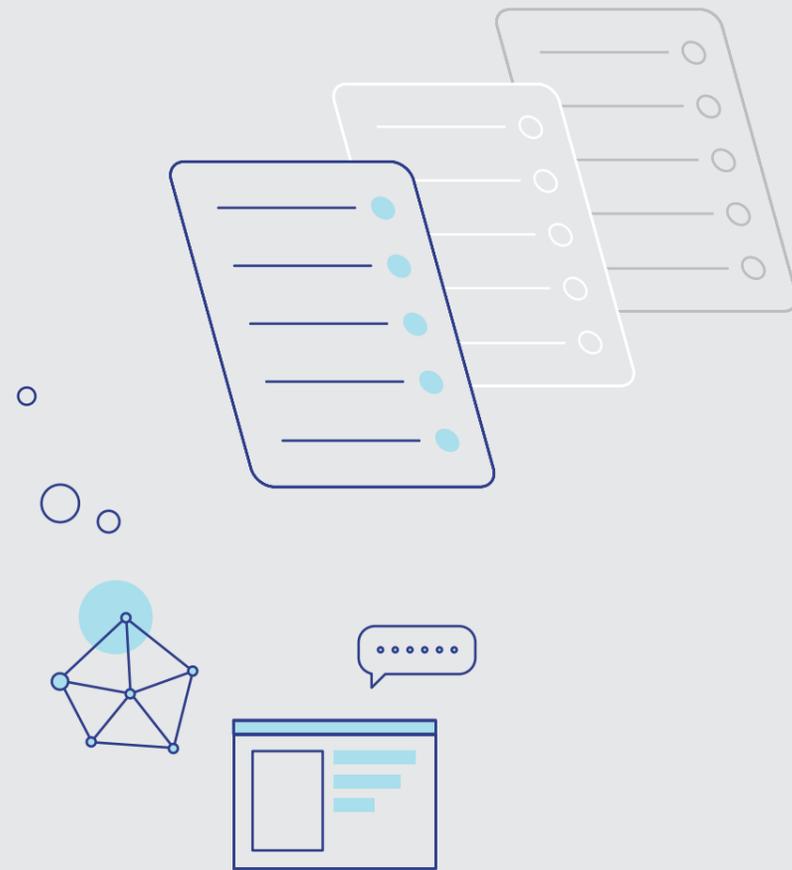
- (예산편성 기본원칙) 유해·위험요인 확인 절차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제거·대체·통제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의미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포함
- 또한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해야 함
- (용도에 맞게 집행)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편성된 용도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평가표 예시

분야	평가항목	수준(매우미흡→매우양호)				
		1	2	3	4	5
A 경영자 리더십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					
	②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여부					
	③ 안전보건 업무절차 및 구성원의 책임·권한 부여 여부					
	④ 최고경영자 주재 안전보건 회의 정기 개최 여부					
	⑤ 재해예방 관련 필요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평가 반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B 근로자 참여	①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절차 여부					
	②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여부					
	③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한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여부					
	④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 여부					
	⑤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여부					
C 위험요인 파악	①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현황 파악 여부					
	② 산업재해, 아차사고 조사 절차 마련 여부					
	③ 밀폐공간, 화재위험 등 위험장소 별도 관리 여부					
	④ 정기 또는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성 여부					
	⑤ 신규 설비·물질 등 도입 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D 위험요인 제거·조치	①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운영여부					
	②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검토·개선 여부					
	③ 위험요인을 대체·통제하기 위한 검토·개선 여부					
	④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⑤ 점검·정비 수리 등 비일상작업 안전절차 마련 여부					
	⑥ 위험요인 개선사항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 여부					
E 비상조치 계획 수립	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 파악 여부					
	②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 수립 여부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 여부					
	④ 비상조치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					

1)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22)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부록



1.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92
2. 각종서식	121
3. 위험성평가 절차서	16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211	제1조(목적).....211
제2조(정의).....211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3조(적용범위).....222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222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222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226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25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226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227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227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227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229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230	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230
	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32
	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233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237	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236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238	
제4장 보칙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238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23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23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심리절차의 관한 특례).....239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239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240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241
부 칙.....241	부 칙.....2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정 2021. 1. 26., 법률 제1790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 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p>제정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0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별표 1] 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 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노관 기능 손상, 급성 세노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5.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6. 톨루엔(toluene)·크실렌(xylene)·스티렌(styrene)·시클로헥산(cyclohexane)·노말헥산(n-hexane)·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애, 경련, 급성 기질성 뇌 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9.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11. 인[백린(白燒), 황린(黃燒)]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2.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13.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14.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15.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p>	<p>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p> <p>16.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p> <p>17. 보건의로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p> <p>18.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p> <p>19.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p> <p>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p> <p>21.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 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p> <p>22.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p> <p>23.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p> <p>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p> <p>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 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p> <p>가.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p> <p>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p> <p>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p>	<p>1.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p> <div data-bbox="2240 1423 2775 190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별표 2] 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철도역사의 시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p> <p>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 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p> <p>5.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p> <p>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p> <p>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의 도서관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9. 「의료법」 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것</p> <p>10.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노인 요양 시설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1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것</p> <p>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p> <p>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p> <p>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p> <p>1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년호의 전시시설 중 옥내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p> <p>16.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은 제외한다.</p> <p>17.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또는 같은 표 제 14 호나목2)의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p> <p>18.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p> <p>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p> <p>비고</p> <p>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p> <p>2.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p> <p>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p> <p>나.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 호나목2)의 오피스텔인 건축물</p> <p>[별표 3]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2249 1428 2772 1879"> <tr> <td data-bbox="2249 1428 2404 1606">1. 교량 가. 도로교량</td> <td data-bbox="2410 1428 2772 1606">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td> </tr> <tr> <td data-bbox="2249 1610 2404 1753">나. 철도교량</td> <td data-bbox="2410 1610 2772 1753">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td> </tr> <tr> <td data-bbox="2249 1757 2404 1879">2. 터널 가. 도로터널</td> <td data-bbox="2410 1757 2772 1879">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td> </tr> </table>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table border="1"> <tr> <td>2. 터널 가. 도로터널</td> <td>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td> </tr> <tr> <td>나. 철도터널</td> <td></td> </tr> <tr> <td>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提) 및 호안 (護岸)</td> <td>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 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 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td> </tr> <tr> <td>나. 계류시설</td> <td></td> </tr> <tr> <td>4. 댐</td> <td>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td> </tr> <tr> <td>5. 건축물</td> <td>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td> </tr> <tr> <td>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td> <td>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 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td> </tr> <tr> <td>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td> <td>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td> </tr> <tr> <td>8. 옹벽 및 절토사면 (꺾기비탈면)</td> <td>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 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td> </tr> </table>	2. 터널 가. 도로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나. 철도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提) 및 호안 (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 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 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나.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 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꺾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 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2. 터널 가. 도로터널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나. 철도터널																			
3. 항만 가. 방파제, 파제제 (波除提) 및 호안 (護岸)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 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 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나. 계류시설																			
4. 댐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5. 건축물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제방 다. 보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국가 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8. 옹벽 및 절토사면 (꺾기비탈면)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 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 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흥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 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 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p> <p>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p> <p>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p> <p>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p> <p>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p> <p>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p> <p>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p> <p>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p> <p>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보를 말한다.</p> <p>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 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p>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p> <p>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 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 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p>	<p>3. 법 제2조제4호다목의 영업장</p> <p>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제2호의 시설물은 제외한다)</p> <p>가.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p> <p>나.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에서정한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p> <p>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p> <p>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 터널(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로 한정한다)</p> <p>마. 다음의 시설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p> <p>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p> <p>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 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사업소</p> <p>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 시설 또는 유기 기구</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p> <p>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p> <p>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p> <p>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p> <p>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 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p> <p>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p> <p>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의 업무에 담당하는 사람</p> <p>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p>	<p>제2장 중대산업재해</p> <p>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p> <p>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p>
<p>제2장 중대산업재해</p> <p>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p>	<p>제2장 중대산업재해</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의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4.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p> <p>5.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p> <p>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p> <p>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p> <p>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p> <p>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p> <p>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p> <p>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p> <p>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p> <p>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p> <p>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p> <p>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p> <p>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p> <p>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p> <p>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p> <p>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p> <p>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p> <p>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회 이상 점검할 것</p> <p>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p> <p>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p> <p>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업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 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 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 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p> <p>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은 총20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2.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기관 등 2. 교육일정 3.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해당 교육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연기를 한 번만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연기 가능 여부를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안전보건교육을 연기하는 경우 교육일정 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안전보건교육에 드는 비용은 안전보건교육기관등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가 부담한다. ⑨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⑩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⑪ 제10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p> <p>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p> <p>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제2호에 따라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호에 따른 감경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p> <p>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p>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중대시민재해</p> <p>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p> <p>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2. 사업·사업장의 규모나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제3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p> <p>3.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rowspan="2">근거법조</th> <th colspan="3">과태료</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이상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td> <td>법 제8조 제2항</td> <td>1천만원</td> <td>3천만원</td> <td>5천만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중대시민재해</p> <p>제8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 	위반행위	근거법조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2항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p> <p>④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2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나.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다. 그 밖에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p> <p>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p> <p>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 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p> <p>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 조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별표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濟)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div>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 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div> <p>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p> <p>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제9조(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제 9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 실시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p> <p>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제10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p> <p>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p> <p>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p> <p>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p> <p>가.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p> <p>나. 제4호에 따라 수립된 안전계획의 이행</p> <p>다.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법 제9조제2항제4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되도록 할 것</p> <p>4.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 다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특별법」 제6조에 수립·시행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6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p> <p>나.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와 공중교통수단의 점검·정비(점검·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다.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p> <p>6. 제5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7.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 할 것. 다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시행하거나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기대응계획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한 경우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점검하거나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p> <p>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p> <p>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p> <p>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긴급구조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 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p> <p>라. 공중교통수단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의 제1종시설물에서 비상 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p> <p>8.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p> <p>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능력에 관한 평가기준·절차</p> <p>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p> <p>제11조(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p> <p>①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p> <p>②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p> <p>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p> <p>②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p>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나 공중교통수단의 시설 및 설비를 정비·점검하는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6조, 제7조,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 되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위반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①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이하 이 조에서 “공표”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 한 중대산업재해로 법 제12조에 따라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표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라는 공표의제목 2. 해당 사업장의 명칭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4.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5.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6.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공표하려는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표는 관보,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p> <p>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1. 26.] 제16조</p>	<p>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p>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17907호, 2021. 1. 26.></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32020호, 2021. 10. 5.></p> <p>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각종서식

※ 본 서식은 예시이며
개별시설의 사정에 맞게 변경, 사용

서식 01 업무배치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담당업무(배치표)		
직책	성명	담당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1.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당해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6. 위의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서식 02 업무평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평가표						
평가기준	양호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수립된 안전보건목표를 달성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함				
	보통	법령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함				
	미흡	법령에 따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음				
직책	성명	담당업무	평가			
			미흡	보통	양호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자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안전 보건총괄 책임자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서식 03 유해·위험요인 확인서

유해·위험요인 확인서					
시설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유해·위험요인 조사	유해·위험작업				질병
	작업내용	장소	위험정도 (상중하)	사고유형	질병유형
	푸트트럭 물건 하역 작업 시	야외현장		③갈림 ④부딪힘	
	이동용 사다리, 고소작업대 사용	실내·외		①추락·떨어짐	
	전기작업 시	보일러실		⑪감전 ⑫화재·폭발 ⑰질식	
				①추락·떨어짐 ⑬전도 ⑮교통사고	
<p>< 사고 유형 > ①추락·떨어짐 ②끼임 ③갈림 ④부딪힘 ⑤낙하·맞음 ⑥붕괴·무너짐 ⑦넘어짐 ⑧절단 ⑨베임 ⑩찢림 ⑪감전 ⑫화재·폭발 ⑬전도 ⑭무리한 동작 ⑮교통사고 ⑯누출·접촉 ⑰질식 ⑱기타</p> <p>< 질병 유형 > ①진폐 ②중독 ③난청 ④요통 ⑤기타</p>					

서식 04 유해·위험요인 확인에 따른 개선방안 계획서

유해·위험요인 확인에 따른 개선방안			
시설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현황 및 문제점	① 행사용품 적재를 위하여 이동용 사다리 사용 시 떨어짐 가능성 다분 ② 보일러 교체를 위한 보일러시 진입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누출 가능		
	사 진		
개 선 방 안	점검자 의 견	<단 기> ① 이동용 사다리 사용 및 안전교육 실시 ②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장 기> ①,② 작업에 대한 외부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근로자 의 견	①,②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교육	①,②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편성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 시 유해·위험요인 구체적으로 기재 ※ 개선방안 작성 시 단기 및 장기 계획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 05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결과보고서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결과			
시설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유해·위험요인	이동용 사다리 사용에 따른 떨어짐		
개선 방안	점검자 의 견	<단 가>	<장 가>
		①이동용 사다리 사용 및 안전교육 실시 ②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①,②작업에 대한 외부교육을 위한 예산 편성
	근로자 의 견	①,②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교육	①,②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편성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 착용확인 · 외부교육을 위한 내년 예산 편성 및 교육계획 수립 · 2인1조 작업을 위한 보조인력 예산편성 		
	사 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거→대체→통제→보호구 착용 순으로 개선 필요(왼쪽이 가장 효율적) ※ 개선조치 시 점검자 및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치 필요 ※ 유해·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담당자 필수 지정 		

서식 06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표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표			
시설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점 검 사 항		이 행	미이행
		개선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 파악 여부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위탁, 용역 등 모든 구성원이 유해·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 또는 제도 운영 여부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조사를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여부			
동종업체 산업재해를 조사·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 파악 여부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또는 유해·위험요인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한 관리 여부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유해·위험요인 도입 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여부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 관리 여부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 파악 여부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 위험성평가, 교육 등의 실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서식 07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점검표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점검표			
시설명: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확인자	(서명)
점검사항		이행	미이행
개선사항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 평가 여부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 수립 여부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 여부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제거→대체→통제→보호구 순으로 검토 여부			
위험요인 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 마련 여부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여부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 이행 및 점검 여부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절차 마련 여부			
새로운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 변경 시 사전에 교육 등의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 마련 여부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 작성 여부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여부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보고			

[참고] 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떨어짐

사람이 인력(중력에 의하여 건축물, 구조물, 가설물, 수목, 사다리 등의 높은 장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함)



적재대상부에서 적재물 취출 작업중 중심을 잃고 떨어짐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떨어짐



청소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폐기물을 적재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짐



파쇄기(Crusher) 내부에 떨어짐



건물외벽청소 작업 중 달비계에서 떨어짐



지붕 개보수작업 중 슬레이트에서 떨어짐

끼임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직선운동하는 물체 사이의 끼임, 회전부와 고정물체 사이의 끼임, 로울러 등 회전체 사이에 물리거나 회전체, 돌기부 등에 갇힌 경우를 말함



마그네틱 컨베이어 풀리 사이의 이물질 제거중 끼임



로더 버킷 불시 하강에 의한 끼임



후진하는 덤프트럭 뒷바퀴에 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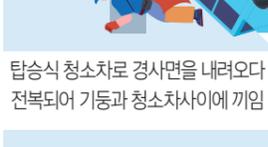
탑승식 청소차로 경사면을 내려오다 전복되어 기동과 청소차사이에 끼임



엘리베이터 수리 시 끼임



압축기 청소 작업 중 끼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호퍼에 떨어져 블레이드에 끼임



건설폐기물 하역장에서 후진하는 덤프트럭에 추돌하여 뒷바퀴에 끼임

부딪힘

재해자 자신의 움직임이나 동작으로 인하여 기인물에 접촉 또는 부딪히거나, 물체가 고정부에서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움직임 등에 의하여 부딪히거나 접촉한 경우를 말함



쓰레기 청소 및 수거작업 중 차량과 부딪힘



물건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힘



지게차의 과적으로 인해 시야 미 확보로 근로자와 부딪힘



화물차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근로자와 부딪힘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문이나 주변 구조물에 부딪힘



좌변기에서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물탱크에 머리를 부딪힘

맞음

구조물, 기계 등에 고정되어 있던 물체가 중력, 원심력, 관성력 등에 의하여 고정부에서 이탈하거나, 설비 등으로부터 물질이 분출되어 사람을 가해하는 경우를 말함



청소작업중 떨어진 철근에 맞음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쓰레기 압축작업 중 튀어나온 파편에 맞음



집게(너클) 크레인 작업 중 폐품이 떨어져 맞음

깔림

기대어져 있거나 세워져 있는 물체 등이 쓰러져 깔린 경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등이 운행 또는 작업 중 집어진 경우를 말함



와이어 로프 파단으로 인한 물체에 깔림



작업중인 근로자가 철근구조물에 깔림

화재, 폭발

· 화재 : 가연물에 점화원이 가해져 비의도적으로 불이 일어난 경우를 말함
· 폭발 : 건축물, 용기 내 또는 대기 중에서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열, 폭음, 폭발압이 동반하여 발생하는 경우를 말함



산소-LPG 가스용기 사용 중 폭발



빈드럼통을 가스 절단기로 절단하던 중 내부에 남아있던 인화성 가스폭발



폐수집수조 배관 연결 위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남아있는 가스에 튀어 폭발



지하 저수조에서 용접 중 유기용제 폭발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물질을 혼합하여 폭발



설비 정기점검 부실로 암모니아(NH3)가 누출되어 폭발

누출

· 시설물 교체·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종사자에게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함
· 액체나 기체가 밖으로 의도치 않게 새어나옴 (가스누출, 방사능 누출등)



인화성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



LPG가스 누출 사고로 중독

질식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 물질이 가스상태로 공기중에 발생될 때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질식하여 사망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에 중독

[참고 2]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따른 대처방안

◎ 화물 집배업무의 공정 흐름별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구분	위험요인	안전대책
간선 차량 상하차 작업	분류장 도크 접안중인 차량과 도크 사이로 도크위에서 작업중인 근로자 추락	· 선차량이 도크에 접안하면 차량이 도크에서 이안되지 않도록 바퀴 하단에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차량 유동방지를 위한 고정 실시
	적재함을 열던 중 쏟아진 화물에 맞음	· 간선차량 적재함을 열 때는 화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한쪽 문을 고정한 상태로 다른쪽 문을 서서히 개방 · 망, 로프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고정
분류 작업	반복되는 하차작업으로 어깨와 허리 통증	· 화물을 꺼내어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작업을 할 때는 주기적으로 작업자의 작업방향 등을 바꾸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작업 · 스트레칭 및 적절한 휴식 실시
	컨베이어 넘어가려던 근로자 신체 일부 끼임	· 컨베이어 반대방향으로 넘어갈 경우 반드시 건널다리를 사용 · 건널다리 통로가 컨베이어 벨트동면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비상정지스위치를 사용하여 컨베이어가 멈춘 후 안전하게 넘어가기
	화물이 적재되 대차(롤테이너) 밀면서 이동 시 진동에 의해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 충격	· 대차(롤테이너)사용 시 시야가 확보될 정도까지만 화물을 적재하고 반드시 적재함 문(front bar)을 결속시킨 상태에서 이동
	상하차 작업 중인 지게차와 부딪힘	· 지게차 작업 시 작업구역을 별도로 분리하고 근로자 출입이 있는 곳에서는 유도자 배치, 신호에 따라 작업 실시
	물류창고 컨베이어 하부 청소작업 중 감전	· 컨베이어 접지 조치 철저 -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제 외함 및 철대에 접지 실시 · 컨베이어 절연상태 관리 철저 - 금속제 외함, 전선 등은 전로부터 항상 양호한 절연상태 유지 및 주기적 저항측정관리

집배송 작업	화물이 적재되 롤테이너가 미끄러지면서 근로자와 부딪힘	· 롤테이너에 화물을 임시 보관 시 경사로에 위치시키지 않음 · 이동방지를 위해서 고정장치(바퀴 스톱퍼)를 사용
	계단을 급하게 오르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짐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반드시 이동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반드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이동
	중량물 혹은 장척화물 등을 과도한 힘과 동작으로 운반	· 중량물, 장척화물 등을 취급 시 리프트게이트, 지게차, 대차 등을 활용하여 운반

◎ 급식실 유해위험요인 및 핵심 안전보건관리

위험요인	안전대책
부딪힘 넘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정리정돈을 통해 안전통로 확보 · 작업 후 반드시 트랜치 덮개를 덮음 · 넘어짐 주의 경고 표지판 부착 · 동료와 위험요인 공유 · 바닥물기, 기름기 및 떨어진 음식은 바로 제거 · 사용 완료한 호스 정리 정돈 · 급식실 내 급하게 뛰지 말 것 · 작업장 정리정돈을 통해 안전통로 확보 · 작업 후 반드시 트랜치 덮개를 덮음 · 넘어짐 주의 경고 표지판 부착 · 동료와 위험요인 공유 · 바닥물기, 기름기 및 떨어진 음식은 바로 제거 · 사용 완료한 호스 정리 정돈 · 급식실 내 급하게 뛰지 말 것

4. 일하시는 곳에서 사고(떨어짐, 넘어짐, 베임, 까임, 깔림 등 일하는 중 다치는 것)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 * 예시) 해당 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를 중심으로 예시
- * 위험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장소, 해당 위험요인 등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5. 일하시면서 건강에 영향(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이유로 걸린 질병)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모두 작성하여 주세요.

- * 예시) 해당기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강상 영향을 중심으로 예시
- * 건강상 유해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장소, 해당 요인, 작업내용 등을 같이 작성해주세요.

6. 기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서식 09 종사자 의견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결과 관리대장

종사자 의견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결과

연번	일시	청취방법	주요내용	조치내역	
				조치일	조치사항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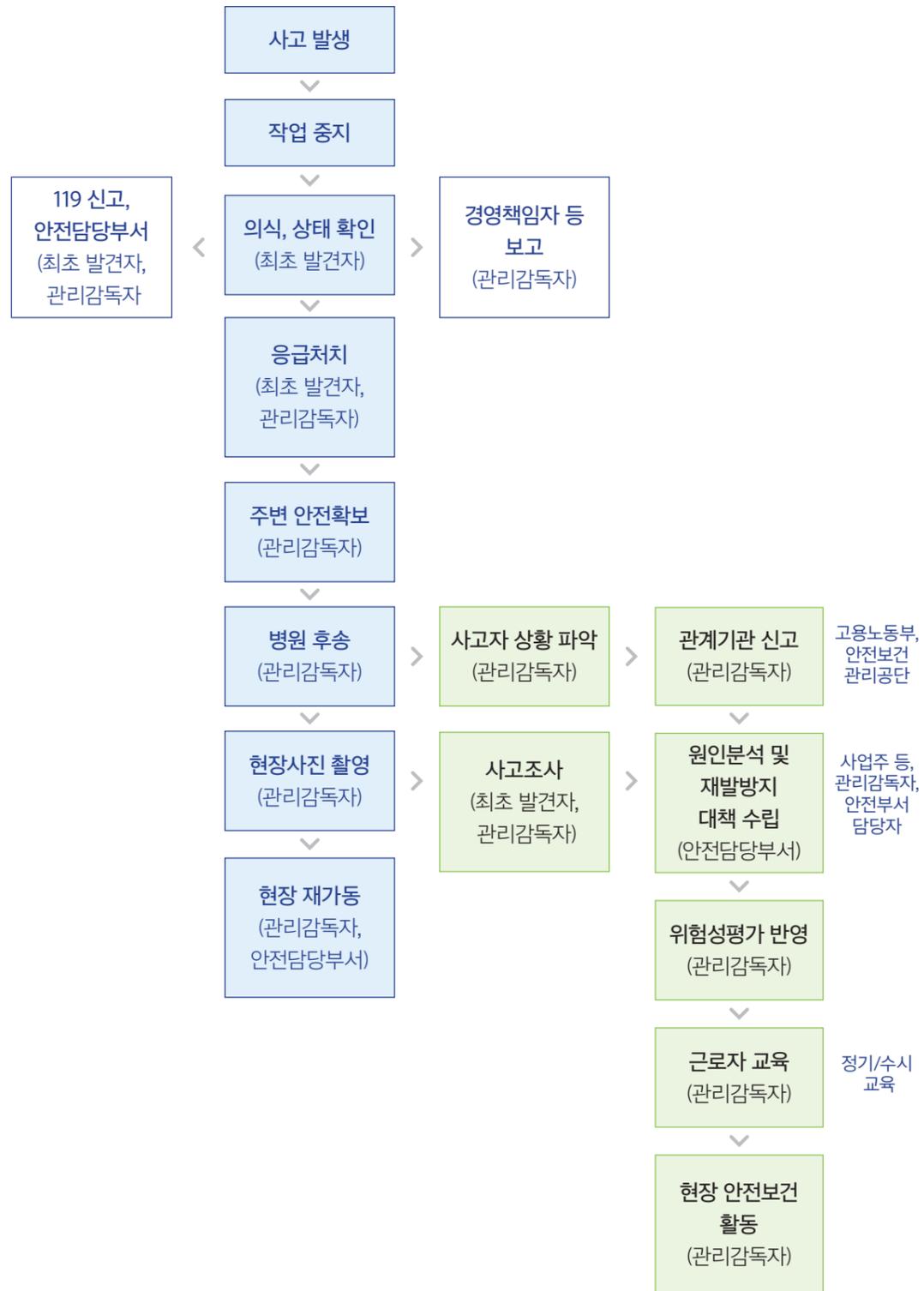
서식 10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표			
시설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검자	(서명)	확인자	(서명)
점검사항		이행	미이행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 여부			
종사자에게 사업장 내 유해·위험관련 기계·기구·설비·물질, 위험장소 등의 안내 여부			
종사자에게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의 공개 여부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적극적 안내 여부			
사내 게시판, 건의함, 간담회 등을 통해 종사자의 의견 적극적 수렴 여부			
T.B.M, 안전제안활동, 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절차 운영 여부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작업 관련 종사자 참여 여부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작업 관련 종사자 참여 여부			
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가능한 환경 조성 여부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 주기적 공개 여부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서식 11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서식

결 재			
<h2 style="margin: 0;">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h2>			
2023. 0. 0.			
○○○노인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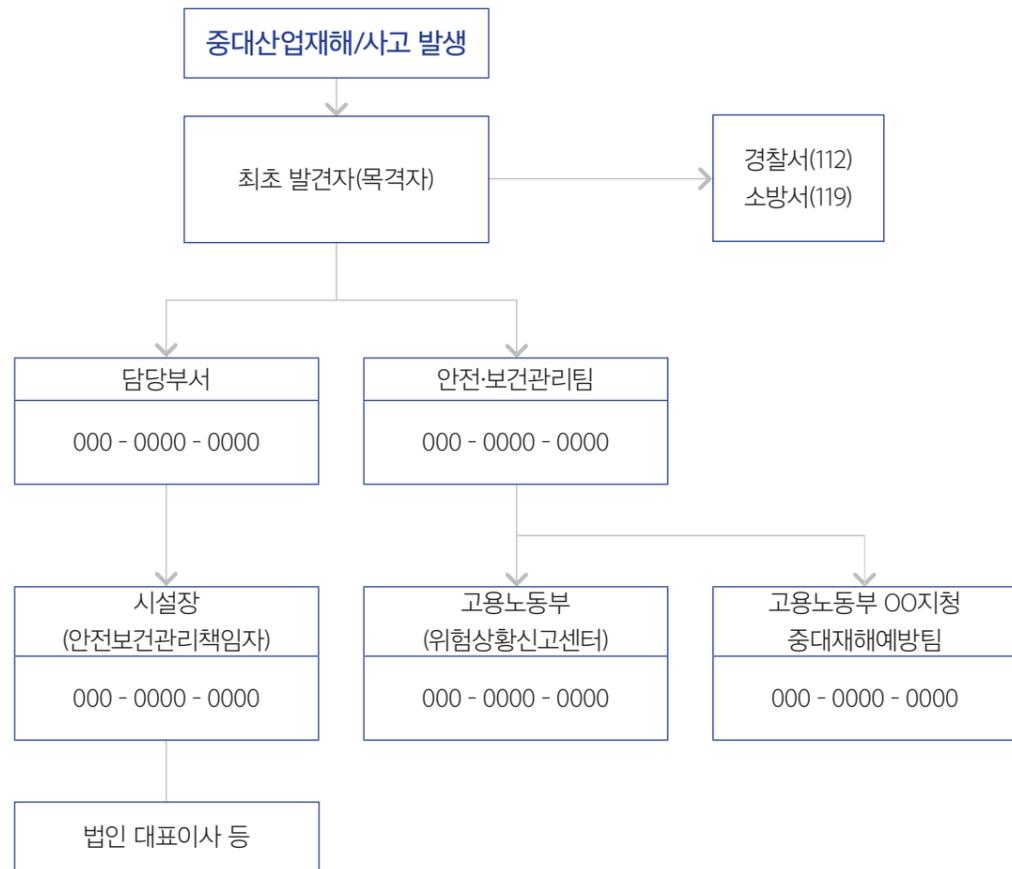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흐름도



대응·조치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즉시 해당 작업 중지 · 최초 발견자는 재해발생 장소 및 환자상태를 관리감독자에 즉시 연락 ※ 비상연락망 갱신·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 인명피해, 화재 등의 발생시 119 또는 112 등에 즉시 신고 	최초 발견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혈장비 또는 구급키트를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조치 실시 · 중할 경우 119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최초 발견자 관리감독자
사고현장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대로 현장 보존 · 2차재해 등의 발생우려에 따른 작업 중지 및 작업자 대피 · 관계자 외 현장 출입통제 	관리감독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자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 119 또는 112에 따른 지시업무 수행 · 재해자 보호자에게 재해자 상황 및 상태 알림 	관리감독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대상인 경우 관계기관으로의 사고발생 보고 (고용노동부 등) · 재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보상 및 관리 · 재해발생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해당사항 전직원 공유를 통한 경각심 강조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사전실시 · 교육을 통한 훈련 또는 시뮬레이션 실시 · 작업자 안전보건장비 현행화 	관리감독자 경영책임자 등

000노인복지관 비상연락망



• 주요 연락처

구분	부서(기관) 명	전화번호
내부	경비실	
	안전·보건 담당부서	
	시설장실	
외부	00 구청 담당부서	
	00 고용노동부지청	
	00 지구대	
	00 119안전센터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문서번호		일자	
수신		발신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	근로자수	
주소		전화번호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종	입사일	재해정도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부상 (치료예정기간 개월)

3. 재해발생내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4. 사고경위(육하원칙)

5. 조치 및 전망

6. 기타 중요 사항

7. 중대재해 원인 분석표

1) 재해발생의 경위(6하원칙에 의거 작성)	
2) 재해발생원인 (1) 사고당시 안전시설 설치여부 : (2) 피해자의 보호구 착용여부 : (3) 안전작업 미숙여부 : (4) 감독자의 감독 불충분 여부 : (5) 타인의 안전작업 미숙여부 :	
3)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4) 상기 사고에 대한 예방책	
5) 상기사고에 대한 책임 (1) 1차 책임자 : 피해자 및 가해자 본인 (서명) (2) 2차 책임자 : (서명) (3) 3차 책임자 : (서명)	

(고용노동청 보고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I. 사 업 장 정 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 인 소속인 경우(건설 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 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민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 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 해 정 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국적	[]내국인 []외국인 [국적: @체류자격:]			⑩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⑩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상용 []임시 []일용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근무형태	[]정상 []2교대 []3교대 []4교대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상해종류 (질병명)		⑯상해부위 (질병부위)		⑰휴업예상일수	휴업 []일				
III. 재 해 발 생 개 요 및 원 인	⑱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 재해발생원인										
IV. ⑳ 재 발 방 지 계 획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 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재해 재발방지 계획서

시설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재해 개요			
소 속		성 명	
근로형태		생년월일	
발생일시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재해유형	
재해발생 내용			
사 진			
발생원인			
재발방지 계획			
<단기계획>		<장기계획>	
작성 자 (담당자)	(서명)	확 인 자 (경영책임자 등)	(서명)
※ 재해발생 내용은 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발생원인과 방지 계획은 상호대응이 되도록 작성 ※ 재발방지 계획은 사업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단기계획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나 개선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계획으로 제시			

○○사고 대비 훈련 시나리오(추락사고 예)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00:00~00:01 추락사고 발생 /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00:06 환자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119 구조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환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00:10 상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 “△△공장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보존 조치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환자 병원 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비상대비 훈련 관리대장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훈련유형	훈련내용
1				
2				
3				
4				
5				
6				
7				
8				
9				
10				

○○사고 대비·대응조치 점검표

구분	단계	점검내용	확인
대비 단계	사전활동		
	준비활동		
	작업활동		
대응 단계	비상상황		
	작업중지		
	상황전파		
	추가피해 방지		
	구조		
	응급조치		
	인계		
	현장 보존		
	조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점검표

시설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점 검 자	(서명)	확 인 자	(서명)
점 검 사 항		이 행	미이행
개선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관리감독자(담당자) 보고 및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하도록 절차 규정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및 현장보존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관할 고용노동청 및 119 등 관련 기관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신고 규정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비롯한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 절차화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관계자와 현장의 출입통제 절차 규정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및 그 가족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절차 규정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작성 및 갱신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재발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여부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예방코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대피 훈련 등의 사전대응 훈련 진행 여부			
* 점검 후 이행되지 않은 사항 추가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			

서식 12 안전·보건 예산편성 서식

안전·보건 예산편성 내역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전년도)	2024년
인력 및 시설분야	· 위험시설 정비 및 개보수		
	· 안전검사 실시		
	· 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투자		
	· 안전보건조직 노무관리		
안전분야	· 안전인력 육성 및 교육		
	· 안전보건 진단 및 컨설팅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보호구 구입		
보건분야	· 작업환경측정 실시		
	· 특수건강검진 실시		
	· 근골격계질환 예방		
	· 휴게·위생시설 관리		
기타	·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지원 - 교육 지원 - 시설 지원		
	· 안전보건 캠페인 추진 - 행사 및 포상 - 캠페인 및 홍보		
예비	· 예비비		

서식 15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재	담당	사무국장	관장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채용 교육 <input type="checkbox"/> 작업내용 변경 교육 <input type="checkbox"/> 특별안전보건 교육 <input type="checkbox"/> 정기 안전보건 교육 <input type="checkbox"/> 관리감독자 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교육 ()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 미 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 실시자수								
교육제목									
교육내용									
교육강사	성명	직명		주요이력			비고		
교육참석자명단	직종	성명	서명	직종	성명	서명			

서식 16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I. 안전보건관리체계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40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자원 배정(시설, 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자원 배정(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15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서식 19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표

안전점검표				
(점검상태: 양호○, 보통△, 불량×)				
구분	점검항목(예)	점검결과		조치사항
		/	/	
안전관리	-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적합한가?			
	- 시설물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 응급전화번호 및 비상연락망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가?			
실외환경	- 시설 주변에 감전 위험은 없는가?			
	- 위험한 적치물,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실내환경	- 모든 설비는 움직이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벽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가?			
	- 창문, 방충망의 상태는 안전한가?			
현관·통로·계단·비상구	- 출입문, 현관문 등의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가?			
	- 계단, 통로 부분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있는가?			
	- 계단의 안전 상태는 양호한가?			
화장실·세면대	- 화장실 내 전기 콘센트 등 전기용품은 안전한가?			
	- 세면대의 고정 상태는 안전한가?			
전기가스·위험물 안전관리	- 전선, 콘센트, 플러그 등 손상된 부분은 없는가?			
	- 한 개의 콘센트에 용량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 분배전반 및 각종 전기기구의 노후 및 파손된 것은 없는가?			
소방시설 관리	- 가스경보기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 대피를 위한 대피도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 소화기, 스프링쿨러 등 소화장비의 작동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비상대피 시설관리	- 옥내소화전의 관리 및 작동이 양호한가?			
	-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 등이 화재 등 유사시 사용이 가능한가?			
	- 피난유도등 유도표지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비상대피 시설관리	- 건물 내 대피경로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없는가?			

서식 20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총괄)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시설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관리감독자 -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내부 절차에 따른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 참여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시기 및 대상의 적정성 - 정기평가: 매년(계획에 따른 시기) - 수시평가: 아래 계획 실행 전 <p><수시평가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본부 전담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방법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총괄·관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보좌 - 관리감독자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위험요인 파악의 적정성 -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유해 위험요인 누락이 없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 위험요인 개선 수준 -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 개선여부 확인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절차운영 기반 -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 -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차사고 발굴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수행한 도급·용역·위탁업무 기록관리				
· 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적정기간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용역·위탁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 사전에 유해 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 적정기간보장등 				
· 도급·용역·위탁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평가결과 환류)				

6.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신속 대응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 비상조치계획에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별로 구분하여 수립				
· 비상조치계획에 소속기관 근무환경 상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인적·물적·자원)가 적절히 포함				
·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가 마련				
·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7.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내부 절차·기준·매뉴얼) 교육				

점검일자	· · ·	점검자	
------	-------	-----	--

※ 반기1회 이상 점검



위험성평가 절차서

『위험성평가』실시규정

2022. 1. 2.

시설명 : ○○○○노인종합복지관

방침 및 추진목표

안전보건방침

-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한다.
- ⦿ 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고 위험성평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 우리 기관의 안전보건관리는 위험성평가로 완성한다.



추진목표

- ⦿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 활동 실시
 -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철저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획득한다.
- ⦿ 매년 위험성평가 실시
 -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유해위험요인 10% 감소
 - 개선 후 남아있는 위험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교육, 게시, 전달
 -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노인종합복지관장 : (서명)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승인	시설장
기안	위험성평가 담당

사업장명(단위사업장명) :	제 정 : 2022.1.2
문서번호 :	개 정 :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위험성평가 조직



제4조(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표 2〉와 같이 한다.

〈표 2〉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p>[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의 의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p>[위험성평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p>[위험성평가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p>[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인력의 사정을 감안하여 1인 2역의 업무분담을 할 수 있다.

제5조(평가대상)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제6조(실시시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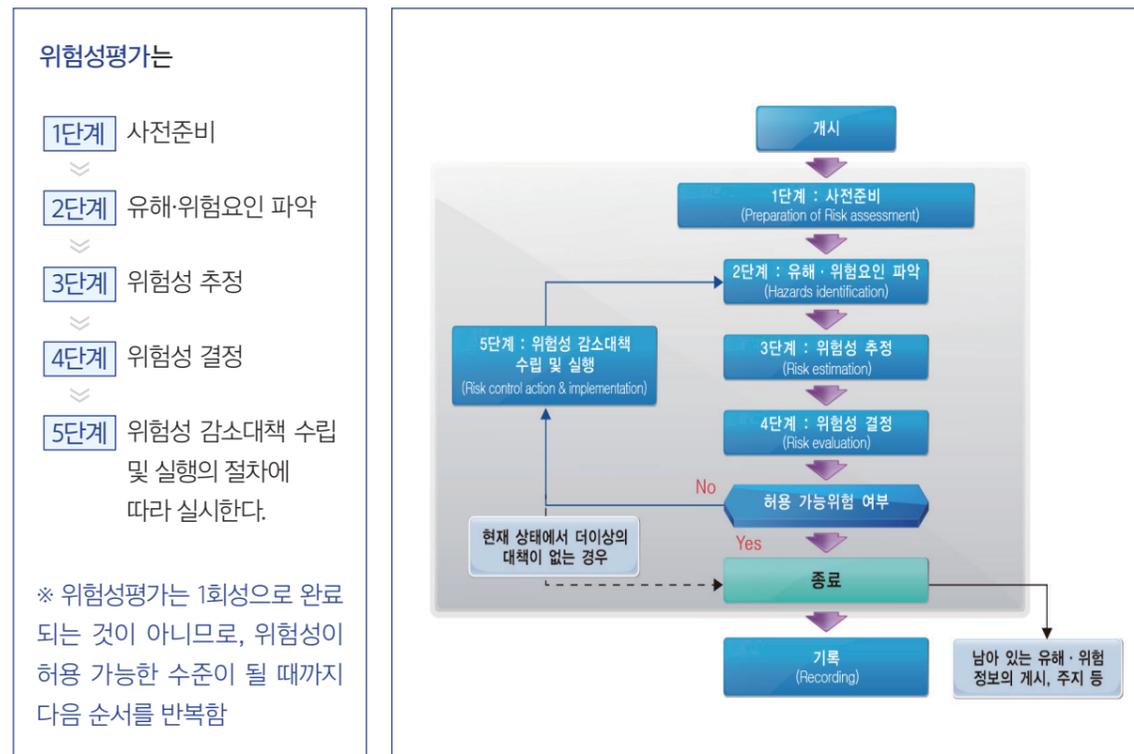
- ① 최초 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30일 까지 실시한다.
-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8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

-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제7조(실시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 ④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감소대책 수립 및 감소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해당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참여한다.
-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제8조(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한다.



-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상세히 파악
-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표 5> 위험성 추정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	대	중	소
	높음 (9)	높음 (6)	보통 (3)
상	높음 (6)	보통 (4)	낮음 (2)
중	보통 (3)	낮음 (2)	낮음 (1)
하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6>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감소대책 수립·실행
 -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기록

제8조(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커지지 않는가를 확인
-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 작업성·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 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출력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회사 안전보건 기록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한다.

제7조(주지방법) 사업주는 구성원들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안전보건교육,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사내에 공지한다.

양식 01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장)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양식 02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참고자료 01

출입허가 절차

1. 출입허가 지역

- ① (위험지역)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② (밀폐공간)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로서 부식성물질이 들어 있거나 질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등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출입허가 절차



※ 위험한 장소에 대한 일반적인 출입허가 절차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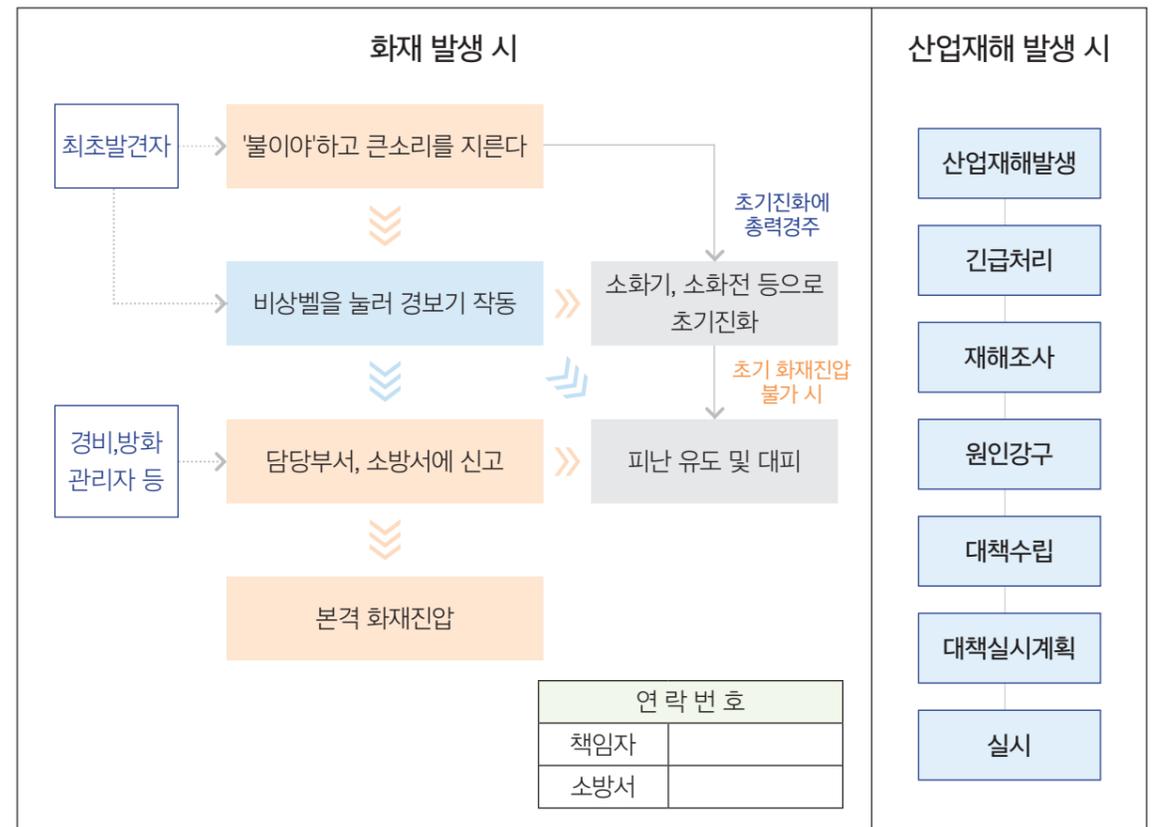
참고자료 02

비상시 대비 및 대응방법

1. 비상상황의 구분

- ① 비상상황은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재해로 구분한다.
- ② 조업상의 비상사태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중대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 나. 중대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 독성화학물질의 누출사고 또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라. 인근지역의 비상사태 영향이 사업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자연재해는 태풍, 폭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비상대응체계



※ 비상대응체계는 사업장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03

작업 전 안전점검 절차

누가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 Ⓞ 사업주 : 작업 전 안전점검 문화 조성 및 지원
- Ⓞ 근로자 : 수행 작업의 위험요인 파악, 보고 및 대응
- Ⓞ 관리감독자 : 해당 작업의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언제 일상작업은 매일 작업 전, 비 일상작업은 당해 작업 전

- Ⓞ 일상작업은 매일매일 작업 전, 정비·보수 등 비 일상작업은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점검 실시

무엇을 점검포인트 + 산업현장 4대 필수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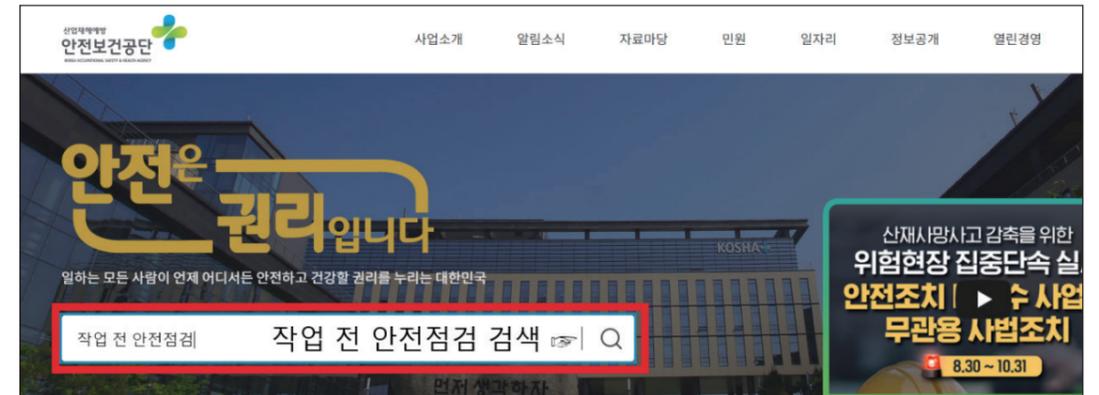
- Ⓞ 기계·기구, 물질, 작업장소를 토대로 위험요인 및 안전조치방안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표지·작업절차 수립 및 공유를 위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

점검포인트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① 기계·기구 및 설비 - 기계·기구 정상작동 유무 - 방호장치 설치 및 기능유지 여부 ② 유해·위험물질 -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관리 여부 ③ 작업장소 - 무너짐, 떨어짐 등으로 인한 작업장소의 안전성 확보 여부	① 근로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② 안전·보건표지 부착 - 위험장소, 설비, 작업별 안전·보건 표지부착 ③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 안전작업절차 제정 및 적정유무 ④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도부

어떻게 안전점검 → 확인(관리감독자) → 조치 → 공유(해당 근로자)

- Ⓞ 수행 작업에 대해 안전점검표로 안전점검 실시
-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제거 또는 통제
- Ⓞ 유해·위험요인 및 조치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

- Ⓞ 작업 전 안전점검표(예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후 검색창에 “작업 전 안전점검” 검색

[작업 전 안전점검 예시표]

[작업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취급 작업

작업 전 안전점검 (개별)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작업 전에 파악하여 그 위험을 제거 또는 통제 후 작업 실시

점검항목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1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2	안전·보건표지 부착(위험장소, 설비 등)		
3	안전·보건교육 실시(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4	안전작업절차 지키기(절차 제정, 준수)		

점검포인트 (세부점검항목)

구분	번호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TOP 3	1	작업장소 및 시간, 이동경로, 작업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는 알고 있는가?		
	2	작업장소 주변에 다른 근로자가 없으며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제)		
	3	작업경로에는 지반침하, 갯길 붕괴 등의 위험성이 있는가?		
자세 선정	4			
	5			
	6			
	7			
	:			
	:			

⏪ 설비, 직업(정의)

⏪ 산업현장 4대 필수안전수칙

⏪ 점검 포인트

① (TOP3)산업재해발생빈도가 높은 3개항목
 ② (자세선정)사업장 특성(아차 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는 점검항목)

참고자료 04

화학물질의 “위험성 추정 및 결정” 방법

1. 위험성 추정(3단계) : 노출수준(가능성)과 유해성(중대성)을 곱하여 산출

$$\text{위험성(Risk)} = \text{노출수준(Probability)} \times \text{유해성(Severity)}$$

<표 1> 노출수준(가능성)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4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0% 초과(노출기준 초과)
상	3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50% 초과 ~ 100% 이하
중	2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초과 ~ 50% 이하
하	1	화학물질(분진)의 노출수준이 10% 이하

<표 2> 유해성(중대성)

구분	중대성	노 출 기 준 (TLV-TWA)	
		발생형태 : 분진(mg/m ³)	발생형태 : 증기(ppm)
최대	4	0.01 이하	0.5 이하
대	3	0.01 초과 ~ 0.1 이하	0.5 초과 ~ 5 이하
중	2	0.1 초과 ~ 1 이하	5 초과 ~ 50 이하
소	1	1 초과 ~ 10 이하	50 초과 ~ 500 이하

<표 3> 위험성 추정

노출수준(가능성) \ 유해성(중대성)	유해성(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최상(4)	매우 높음 (16)	매우 높음 (12)	높음 (8)	보통 (4)
상(3)	매우 높음 (12)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2)	높음 (8)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1)	보통 (4)	보통 (3)	낮음 (2)	낮음 (1)

2. 위험성 결정(4단계) : 위험성이 높은 순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의 정도
12~16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5~11	높음		가능한 한 빨리 개선
3~4	보통	허용 가능	연간계획에 따라 개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참고자료 05

각종자료 다운방법

(KRAS,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관련 모든 자료]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게시판 > 자료실 > 위험성평가 관련자료

[표준작업안전수칙]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 > 산업안전 >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 자료실 >
 - 표준작업 안전수칙 목차
 - ① 일반안전수칙(25종) ② 기계안전수칙(22종) ③ 전기안전수칙(10종) ④ 화학설비안전수칙(19종) ⑤ 유해·위험물질 안전수칙(14종) ⑥ 고압가스안전수칙(14종) ⑦ 차량안전수칙(7종) ⑧ 기타안전수칙(4종)

[산업재해사례]

-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 > 자료마당 > 재해사례 동종업종 및 동종재해사례를 검색하여 수집 및 전파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안내(실시)

참고자료 05 위험성평가 작성방법 예시

공정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대책	진행 일정	담당	예산 금액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시설 관리	• 전기작업시, 메인 차단 하지않고 작업 다가 감전위험	3	4	12	• 메인차단 후, 작업하며 절연장갑 착용	6월		30,000	3	2	6
		3	4	12	• 2인 1조로 작업 • 직원 업무협조 요청	6월		-	3	2	6
	3	2	6	• 안전모 착용	6월		4,000	3	2	6	
	3	2	6	• 우비 및 장화 착용 • 업무 연락망 가동	6월		8,000	3	1	3	
	4	3	12	•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함.	6월		-	4	2	8	
식당	• 화장실 청소실 악품 위험 발생 • 식당 내 화상, 베임 등이 발생 확률이 높은 것에 비해 응급처치물품이 비치 되어 있지 않음.	5	2	10	• 청소중 안내판 사용 및 마스크, 환기	6월		-	5	1	5
		5	2	10	• 식당 내 응급처치물품 비치 필요 (방수밴드, 연고, 지혈제 등)	6월		100,000	5	1	5
	• 손 베임 방지 장갑 착용	5			• 손 베임 방지 장갑 착용	6월		30,000	5	1	5

공정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평가			개선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대책	진행 일정	담당	예산 금액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식당	• 조리실 내 증량물 취급시 허리 다침 • 조리시 착용하는 장화 등을 신고 외부 활동 진행으로 위생 및 낙상의 위험 • 발손의 높이가 높아 화상 및 손끼임의 위험 발생 • 노노케어 외부 활동시 무단횡단, 장애물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 발생 우려 • 넓은 공원에서 흩어져 활동 중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상을 하거나 무더위 철에 어지러움 증세 발생할 시 안전 우려	5	2	10	• 조리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카트 구입으로 원활한 이동	6월		-	5	1	5
		5	2	10	• 2인 1조 작업	6월		-	5	1	5
		5	2	10	• 작업 환경에 맞는 복장 착용	6월		-	5	1	5
		5	2	10	• 발של 변경	7월		250,000	5	1	5
노인일 자리	• 실내에서 주로 청소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활동 진행시 미끄럼에 의해 낙상 사고 발생 우려	4	3	12	• 주기적인 안전 교육 필요	6월		-	5	1	5
		4	3	12	• 안전용품 중 호루라기 구매하여 배분 필요	6월		-	5	1	5
노인일 자리	• 날씨 및 기후 변화에 따른 눈, 비, 자외선 노출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 • 활동시 주방에서 아이들의 간식 준비 중 미끄럼 사고 발생 우려	4	3	12	• 인건용품 중 호루라기 구매하여 배분 필요	6월		-	5	1	5
		4	3	12	• 2인 1조	6월		-	4	1	4
		4	3	12	• 주기적인 안전 교육 필요	6월		-	4	1	4
		4	3	12	• 낙상 예방 실내화(장화) 구매 후 착용	6월		-	4	1	4
				• 낙상 예방 실내화(장화) 구매 후 착용	6월		-	4	1	4	
				• 기후 변화에 따라 안전 물품으로 물, 우의, 모자, 후한기·후서기 예방 물품 등 구매하여 제공	6월		-	4	1	4	
				• 낙상 예방 실내화(장화) 구매 후 착용	6월		-	4	1	4	
				• 주기적인 안전 교육 필요	6월		-	4	1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